

일제식민지배기 한국민족말살을 위한 주요 법제와 정책*

이 종 길**

차 례

I. 서 언

II. 일제의 한국강제병탄과 초기의 법제이식 경과

1. 1910년 이전 일제의 한국국권점탈과 침략기조
2. 강제병탄을 위한 한국사회기반 정비
3. 1910년 강제병탄과 한국식민지배를 위한 주요법제

III. 1920년대까지의 한국민족말살을 위한 주요법제와 정책

1. 식민지배초기의 정보봉쇄를 위한 법제
2. 교육에 대한 식민지배정책 기조
3. 1920년대의 식민지배를 위한 주요 법제 및 정책실상

IV. 1930년대 이후 한국민족말살정책의 가속화와 창씨개명

1. 일제의 대륙침략과 한국식민정책의 변화
2. 한국민족정신 쿠멸을 위한 제 정책
3. 창씨개명의 단행과 전장동원

V. 결 어

* 본 연구는 동아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I. 서 언

1. 2010년은 일본제국주의가 대한제국을 강압적으로 식민지배하에 속박시킨 지 백년이 되는 해이다. 일본 제국주의의 무력적이며 교활한 침탈적 지배책동은 주변의 약소국가들을 멸시하고 그들 내부의 유력세력들을 간교하게 분열시키면서 국권을 탈취하고 민권을 유린하는 비겁적 모습으로 일관한다.¹⁾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하면서 이십세기로 넘어온 우리의 역사는 일제의 간교한 지배술책을 이겨내지 못하고 점차 일제의 지배권역으로 급속히 휩쓸려 들면서 우리가 창신하며 자주적으로 개척해 가야할 행보를 굴절 당하게 된다. 일제는 한국지배를 위해서 간교한 술책과 외교적 언사를 아낌없이 사용하였다. 동양평화와 한국민의 안녕을 위해 자신들과의 결속과 조약체결은 필수적인 것이며 자신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국의 자주독립을 지원하고 평등을 기조로 화친하는 국가관계를 유지해 갈것임을 공언하여 왔다. 그런 한편으로 일제는 러시아세력의 남진을 제어하고 일제의 한국지배를 지지받는 내용으로 영국과 2차에 걸친 영일동맹(1902년1월과 1905년8월)을 맺는다. 또한 미국과는 태프트-카스라 밀약(The Katsura-Taft Agreement, 1905년 7월)을 통해 일제의 한국지배를 인정받는 등으로 외교술을 통해 방어막을 설치한 다음 러일전쟁 승리를 통해

1) 조선에서 청의 세력을 완전히 구축해내는 과정 중에 일제가 행하는 책동을 참고한다. 일제는 1894년 7월25일 한국에서 청일전쟁을 개전하여 전쟁을 수행하면서 그 와중에 이미 한국에 대한 이권을 확보하기 위한 계략을 수립하고 있다. 앞서 7월21일까지 청군이 철수할 것을 조선정부에 요청하였으나 조선정부가 이를 듣지 않자 7월23일 심야에 경복궁을 공격하여 군주를 에워싼 채 내정개혁을 강요한다. 이러한 결과 일제와 조선정부는 1894년8월20일 ‘暫定合同條款’과 8월26일의 ‘大日本大朝鮮兩國盟約’이라는 두 개의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일본정부가 요구하는 내정개혁을 조선정부가 수용하여 차례대로 시행할 것과 조선의 독립자주를 공고히 하기 위한 일은 마땅히 양국정부가 위원을 뽑아 회동하여 議定할 것이며, 양국정부는 청국에 대해 이미 공수동맹관계가 체결되었음을 천명함으로써 조선에서 일본군의 군사행동이 이에 근거하는 것임을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내용으로 채우고 있다. 이렇게 일제의 행동은 이미 한국을 식민지배하기 위한 비겁한 계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국가 간의 신뢰나 진정성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이익침탈과 국권장악을 위해 교묘한 술책을 무력을 동반하여 능숙하게 구사해가는 것이다. (유영익, 갑오경장연구, 일 조각, 1990. 28~29쪽 ;이태진, 1905년 조약 강제시의 韓國駐劄軍의 성격, 한국사론 제 54권, 2008.6. 참조). 위의 두 조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의 각주 9번을 참고바람.

한국지배를 위협하는 최대 세력인 러시아를 완전하게 배제함으로써 한국에 대해 어느 나라도 원군이 될 수 없도록 차단막 구축에 성공한다. 결국 러시아는 물론이고 미국 영국 등의 제국으로부터 일본이 한국에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권리와 인정받은 포츠머스조약(1905년9월)을 체결한 이후 일제는 1905년 11월17일에 한국침략을 본격화하는 乙巳勒約을 강제하는 경과를 거친다.²⁾

일제는 자국 내의 문제를 식민지배로 해소하는 능력도 발휘한다. 일본 국내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선을 식민지배하는 것과 함께 장기적으로 대륙진출을 위한 전제로 한국지배 획책은 필수적 과제가 되어왔다. 물론 明治維新을 통해 서구열강의 앞선 학문을 습득하고 식민지배술을 배우게 됨으로써 일제는 주변 국가를 복속시키고 이권을 침탈하는 등의 침략책략을 향존시키고 있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일제는 한국병탄에 대해 결정적 시점만을 헤아리게 된다. 어느 시점 어느 상황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할 지에 대해 숙고할 뿐 지배대상으로 결정된 한국은 이미 주체적 지위로 고려될 수 없었다. 한국사회에 각종의 법을 이입시켜 정비하고 정치적 위상을 판단하는 등의 결정은 전적으로 한국지배를 좌우할 수 있는 일제침략자들에게 달려있었다.³⁾

한국사회의 변화를 추진하면서 생겨나는 여러 형태의 이권들에 대해서는 일제에 협조하는 부류들에게 배분하였으며, 목표로 삼는 한국병탄과 식민지배복속을 위해서는 외교 경찰 사법 등 국권의 주요내용을 시기를 나누어 침탈하는 교활함을 일관되게 진행한다. 국권찬탈을 위해서는 한국

2) 홍순호, 한일외교의 국제관계사적 성찰, 광복50주년기념논문집 권1, 한국학술진흥재단, 1995 ; 이종길, 조선사회법사고, 동아대출판부, 2007, 273~276쪽 등 참조.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 대한 시간적 한정에 대한 법적측면의 견해로는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로 하는 견해를 참고할 수 있다. 즉,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005. 1.27. 법률 제7361호) 제2조에서 “이 법에서 ‘친일반민족행위’라 함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행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3) 일제의 한국강제병합에 대한 상세과정과 무력성, 그리고 부당성 및 불법성 등에 대한 연구논의는 이태진 사사가와 노리가츠(笠川紀勝) 공편, 한국병합과 현대--역사적 국제 법적 재검토, 태학사, 2009 ; 이태진 외, 한국병합의 불법성연구, 서울대 출판부, 2003 등 참조 요.

인을 최선으로 활용하는 술책을 동원한다. 乙巳勒約을 반대하고 만국평화 회의에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제기하려한 고종황제를 강제퇴위 시키고 순종을 즉위시켜 식민지배를 향한 보폭에 탄력을 더한다. 庚戌年에 한국을 강제병탄하기에 앞서 일제는 병탄에 필요한 법제 및 사회정비를 치밀하게 수행한다. 일제는 한국에 대한 법률 및 사회조사를 통하여 유용하게 사용될 제도를 파악하고 법령을 정비하는 것과 함께, 간악한 일제를 거부하며 대한독립을 강렬하게 요구하던 한국민족의 선각자들을 무단으로 제압하면서 1910년 8월29일에 본격적인 한국병합을 공포하게 되는 것이다.⁴⁾ 일제가 한국에 접근하던 19세기 후반의 상황과 비교해 본다면, 1900년대 초는 러일전쟁 승전 후 을사늑약과 정미칠조약·사법권침탈 등의 경과를 거치면서 한국에 대한 침탈과 멸시의 정도를 훨씬 강화하게 되었으며 이는 식민지배라는 일차적 목표달성을 위한 계략의 실천과정이었다.

2. 일제는 ‘법에 의한 사회운영’이라는 근대사회의 특징적 요소를 식민지 한국사회에 적용할 것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는바, 식민지 통치에 필요한 법령을 한국 사회에 이입시켜 사회 저변에 철저한 정돈을 단계별로 수행한다. 제국주의자인 그들은 식민지배를 위한 법을 설정하여 사회를 새롭게 편성하고 그 법을 근거로 개인의 생각과 행위에 이탈이 없을 것을 강압적으로 요구하면서 그들이 기도하는 새로운 사회로의 이행을 한국민에게 일방적으로 강제시켜갔던 것이다. 법의 이해를 위한 배려와 교육의 시간도 없이 법에 의한 사회통제를 추진하는 일제의 식민지배 전략은 威嚇的이고 강압적이며 일방적인 정치적 결단을 강제로 주입시키는 과정일 뿐이었다. 국가관계에서 기본적 사항인 상대에 대한 존중과 대등성 등은 전혀 배제한 채 당시로서

4) ‘관습조사보고서’는 統監府 法典調査局이 1908년5월부터 1910년9월까지 한국의 民事 商事慣習을 조사한 것을 조선총독부에서 1910년과 1912년, 1913년에 간행하였다. 또한 ‘韓國水產誌’는 한국 어촌사회의 수산현황을 조사하고 어촌사회의 주요사항을 조사하여 1908년부터 1911년에 걸쳐 전 4책으로 편찬하였다. 이들 조사보고서는 한국사회의 실상과 민중들의 삶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정책기조에 의한 것으로, 한국에 대한 식민지배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편찬한 자료이다. 정공식 역, 국역관습조사보고서, 한국법제연구원, 1992 및 農商工部水產局 編, 韓國水產誌 등 참조.

는 약소국이자 후진국인 한국을 강압적으로 병탄하는 경로를 밟으면서 곁으로는 평화와 화친, 정의와 평등 등을 내건 교활한 책동을 지속한다. 그래서 그들의 표리부동한 행위와 침탈과정은 부정의의 전형으로 지목되는 것이다.

이후 강제병탄을 통해 식민지배를 완성한 다음부터 한국을 일본제국주의자들의 필요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유린하고 압살적 수탈정책을 자의적으로 수행하는 등으로, 1945년의 패전 때까지 부단한 침탈정책을 실행하게 된 결과 한국사회와 한국민에게 남긴 폐해는 산정불가에 이른다.⁵⁾ 식민지배 이전부터 이루어지던 한국민에 대한 간교한 탄압은 강제병탄으로 이미 그 정도가 극에 이르렀지만, 병탄이후의 탄압과 착취의 실상은 상상을 넘어 결국 천인공노의 ‘한국민족말살’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韓國⁶⁾民族⁷⁾말살책략을 통해 일제는 한국인의 민족적 주체성과 자주

-
- 5) 일제식민지배가 남긴 폐해를 법사학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구한 성과자료로 광복 50주년기념기념논문집 권1 <과거청산>, 학술진흥재단, 1995를 참고바람.
- 6) 본고에서 사용하는 ‘韓國’이란 용어에 대해 밝혀둔다. 建陽2년(1897)8월14일, 조선개국 506년 紀元節을 기하여 高宗은 年號를 光武로 고치고同年10월12일에 國號를 ‘大韓’으로 정하면서 皇帝에 오른 다음 ‘大韓帝國’을 천하에 공포한다. 대한제국은 光武3年(1899)3월17일에 기본법인 全文9條의 ‘大韓國國制’를 반포한다. 따라서 이전까지의 朝鮮은 국호를 大韓帝國으로 변경하여 이후의 역사를 운영한다. 이러한 ‘大韓’은 일제의 집요한 국권침탈에 저항하면서 國權守護와 大韓獨立을 열망하였지만 결국 1910년 8월29일에 국권을 상실당하는 비극을 맞게 된다. [大韓國國制]의 제1조와 제2조를 참고로 적시한다. 제1조는 “大韓國은 世界萬邦에 公認되온 바 自主獨立한 帝國이니라” 제2조는 “大韓帝國의 政治는 由前則五百年傳來한 시고 由後則恆萬世不變한 오실 專制政治이니라”라고 하여, ‘大韓國’은 오백년 앞선 역사를 잊고 이후로 만세불변하게 이어질 전제국가임을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다. 중요한 것으로 일제는 韓國을 강제병탄 한 직후인 동년 9월에 칙령 제358호로 ‘統監府警察官署官制’改正을 통해 國家名稱을 바꾸게 된다. 즉, 당시까지 사용하던 우리의 국가 명칭을 ‘韓國’에서 ‘朝鮮’으로 변경함으로써 우리는 병탄에 이은 또 한 차례의 恥辱을 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한국지배의 책임자인 ‘統監’을 ‘朝鮮總督’으로 변경하였으며 그가 향후 삼십오 년 동안 조선지배의 최고 책임자로 역할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朝鮮’이라는 명칭이 일제가 우리의 국권을 강제로 침탈하여 식민지배하면서 ‘大韓’ ‘大韓帝國’ ‘韓國’이라는 국가명칭을 임의로 강등 변경하여 사용하게 된 것인 만큼 논의의 전개 및 서술 상 사용하는 용어는 ‘韓國’ ‘韓國人’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당시에 제정 개정 등을 통해 고유하게 사용된 법령의 명칭이나 여타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부득이하게 ‘朝鮮’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다.
- 7) ‘民族’에 대해서는 다음의 정의를 참고한다. “언어 지역 혈연 문화 정치 경제생활 및 역사의 공동을 객관적 요소로 하여 공공히 결합되고, 그 기초 위에서 공통된 정신 및

성에 기인한 어떠한 저항도 압살하고자 하였던 것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한국인을 同祖同根의 皇國臣民으로 기만하면서 실제로는 무비판적이며 도구적인 노예로 몰아가는 지배책략을 실행하였다.

본고는 한국식민지배기간을 통해 일제가 ‘한국민족말살’을 목적으로 시행한 주요 법제와 정책에 대해 시기와 함께 주제별로 이를 분류 또는 통합하면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따라서 일제가 궁극으로 기도하였던 ‘한국민족말살’에 초점을 맞춘 법령 및 주요정책에 대한 검토로 범위를 압축하는 만큼, 한국민족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부정하면서 일제의 것으로 통합시킨 법령의 결정인 ‘創氏改名’이 이루어진 시점까지를 연구범위로 설정하게 된다.

II. 일제의 한국강제병탄과 초기의 법제이식 경과

1. 1910년 이전 일제의 한국국권점탈과 침략기조

일본제국주의는 명치유신을 통해 축적한 국가적 힘을 주변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식민침략 전쟁을 수행함으로써 당시 일본이 국내적으로 당면하고 있던 난관을 해결하면서 식민지 획득을 통해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기회로 삼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는 일차적 목표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궁극에는 바다로 둘러싸인 일본이 대륙과의 연계 교두보를 확보하여야 하는 숙제를 식민지 확보를 통해 달성함으로써 이 후의 국제 확장에 기초를 확고히 하려는 것이었다. 일제의 한국지배는 그래서 단순히 경제적 이익침탈에 머무는 식민지배 경영에 머물 수 없는 것으로, 중국 등지의 대륙진출을 위한 전진기지이자 시점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다. 결국 일제는 명치연간이래 아시아주의라는 명목으로 아시아를 지배할 구상을 설정하는 것과 함께 이를 위해 먼저 조선을 침략하여 실마리를 풀어갈 것으로 하였다. 나아가 일본을 맹주로 하는 대동아공영권 건설을

의식의 주관적 요소가 형성 융합되어 공고하게 결합된 역사적 범주의 인간공동체”. 신용하, 한국민족의 형성과 민족사회학, 지식산업사, 2001. 315~363 참조 요.

기치로 1941년에 대동아전쟁을 도발함으로써 아시아는 물론 세계를 죽음과 폐허로 몰아가는 희대의 부정의를 실행하게 된 것이다.⁸⁾

따라서 일제는 한국식민지배를 위해 장기적인 정책구도에 기초하여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철저한 침략구상을 실천으로 옮겨오는 치밀성과 과감성을 병용하고 있다. 일제는 이미 1876년의 강화도조약을 시작으로 1894년 청일전쟁에서 청의 세력을 배격해 내면서 조선의 내정에 대한 간섭을 구체화 하게 된다.⁹⁾ 즉, 東洋大局의 평화를 유지할 방안마련이 급선무임을 전제로, 재정을 조사하며 중앙과 지방의 관리수를 줄이고, 경비병을 설치하여 국내의 안정을 유지케 한다는 등의 내정관여책을 마련하여 영향을 미치게 된다.¹⁰⁾ 물론 일제는 청과 조선의 관계를 차단하기 위해 조선의 자주성 독립성을 조약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독립국가 조선에 대한 일제만의 전속적 지배를 실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청일전쟁의 승리로 청국을 조선에서 구축해낸 일제는 그 후 조선이 행하는 일제에 대한 저항에 대해 무력과 간악술책으로 무력화를 기도한다.

그런 다음 한국을 둘러싼 러시아세력과의 대립도 영국·미국 등 제3국들과 상호이익을 북인하는 내용의 동맹관계를 앞서 행한 다음 무력을 동

8) 姜在彥, 朝鮮問題における内田良平の思想と行動, 歴史學研究, 1966 및 박경식,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지배, 청아출판사, 1986. 13쪽 참조.

9) 일제는 청일전쟁을 수행하는 와중에 조선정부와 1894년 8월 20일 ‘暫定合同條款’과 8월 26일의 ‘大日本大朝鮮兩國盟約’이라는 두 개의 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잠정합동조관’의 내용은 ①일본정부가 요구하는 내정개혁을 조선정부가 수용하여 차례대로 시행할 것 ②京釜 京仁間 철도건설은 일본정부 또는 일본회사에게 권한을 부여할 것 ③일본정부가 금번에 경부 경인간에 가설한 군용전신에 대한 영구관리권 보증 ④전라도연안에 통상항 한 곳을 개항할 것 ⑤지난 7월 23일 왕궁부근에서 발생한 양국병간의 우연한 충돌사건은 상호추구하지 말 것 ⑥일본정부는 조선의 독립자주를 공고히 하기 위한 일은 마땅히 양국정부가 위원을 뽑아 회동하여 議定할 것 ⑦위의 잠정조관에 花押蓋印(서명날인)을 거친 뒤에 시일을 택하여 궁궐을 호위하고 있는 일본병력을 일률적으로 철수할 것 등이다. 그리고 ‘대일본대조선양국맹약’의 내용은 7월 25일에 청병을 조선에서 철수토록 하는 것에 대해 조선정부가 이를 일본특명전권공사에게 위탁하면서 양국정부는 청국에 대해 이미 공수동맹관계가 체결되었음을 천명함으로써 조선에서 일본군의 군사행동이 이에 근거하는 것임을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유영익, 갑오경장연구, 일조각, 1990. 28~29쪽 ; 이태진, 1905년 條約強制時의 韓國駐箚軍의 성격, 한국사론 제54권, 2008. 6. 참조)

10) 歷史學研究會編, 日本史史料(近代篇), 岩波書店, 1997. ‘朝鮮に關する日清共同內政改革提案’ 참조.

반하면서 한국을 전속적으로 지배하게 된다. 러일전쟁 開戰 직후인 1904년 2월 23일에는 한일간 攻守同盟으로 칭해지는 한일의정서를 조인하게 됨으로써 한국은 전쟁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협조하는 것과 함께 시정개선에 관한 충고를 용인하도록 하였으며, 일본의 승인없이 독자적인 외교관계를 체결 할 수 없음을 약속 하게 되었다.¹¹⁾ 전쟁에서 승리한 일제는 한국지배에 대한 열강의 간섭으로부터 전혀 자유롭게 되었으며, 곧 바로 한국과 乙巳勒約(1905년 11월17일)을 강제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은 일제의 보호국으로 전락되었으며 황제의 권하에 통감이 있으면서 외교를 감리 지휘하며, 국내의 정부조직에는 통감의 지휘를 받는 理事官이 배치됨으로써 실질적인 식민지 통치가 시작되었다. 이후의 시기는 부문마다 보다 조직적인 식민지배를 위해 필요한 법률 등의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이 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식민지배를 합법적으로 수행하는 기반을 공고히 다져가게 된다.¹²⁾ 결국 그로부터 1910년의 庚戌國恥에 이르는 시간까지 일제는 일방적으로 국권을 橫奪할 마지막과정을 주도적으로 운용한 다음 계획한데로 식민지로의 강제併吞을 자행하게 된 것이다.

일제는 조선을 식민지화 해 가는 과정 중기인 1904년의 러일전쟁 수행 중에 ‘對韓方計’ ‘對韓施設綱領’ 등을 통해 이미 한국을 보호국화할 것을 확정하고, 일본에 대한 원료 공급지로써의 역할과 일본 내 과잉농업인구의 한국이주 등을 對韓政策으로 명백히 하게 된다.¹³⁾ 그에 따라 일본인의 한국이민은 급증하는 추세였으며,¹⁴⁾ 이러한 일본 이주민의 한국정착 보장을 위해서도 주거지역 및 경작토지확보는 중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¹⁵⁾ 따라서 일제는 당시 일본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위

11) 歷史學研究會編, 日本史史料(近代篇), 岩波書店, 1997. ‘日英同盟(1902.1.30)’, ‘露國に對する宣戰の詔勅(1904.2.10)’, ‘韓國保護權確立實行に關する閣議決定(1905.10.27)’ 등 참조.

12) 歷史學研究會編, 日本史史料(近代篇), 岩波書店, 1997. ‘第二次 日韓協約(1905.11.17)’ 참조.

13) 權泰愓, 統監府時期 日帝의 對韓 農業施策, 러일전쟁전후 일제의 한국침략, 一潮閣, 182쪽이하 참조.

14) 한국 내 일본인은 1905년 42460명에서 1909년에는 126168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在日韓國人五十年史, 56쪽 참조.

15) 이 당시에 벌써 친일의 매국단체인 일진회가 지방의 소유권 분쟁 등에 깊이 관여하

해서도 한국침략을 중요하게 설정하고 있었으며, 결국 乙巳年인 1905년 11월 17일에 강제적으로 만든 勒約을 근거로 統監府를 설치하여 大韓帝國을 그들의 통제 하에 놓게 되는 것이다.¹⁶⁾

乙巳勒約 체결을 위해 일제는 伊藤博文을 특파대사로 임명하여 치밀한 작전계획으로 이를 성취하게 된다. 1905년 11월 17일 宮庭에서 계속된 대신회의는 한국 주둔군 하세가와 장군의 수행을 받으며 참석하고 있는 伊藤博文의 서명독촉은 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신회의가 종료될 수 없는 상황으로 압박하고 있었다. 이처럼 군대를 동원하는 위압적 방법과 함께 매국수괴 이완용¹⁷⁾ 등을 협조자로 매수한 다음 외교권 탈취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다섯 개 조항의 특약을 만들어내게 된다.¹⁸⁾ 여기서 나타나는 체약방법의 불법성과 책략의 비열성, 내용의 부당성 등은 이 후 일제가 행하는 한국지배 역정에 전형이 됨으로써 이 후 지속된 한국 병탄과정에 끊이지 않는 비참상을 남겨주게 되는 것이다.

면서 위력을 행사하기도 하며, 日人이 지방의 관속이나 無賴輩 亂類등과 합세하여 소유관계를 농단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慶尙南北道各郡訴狀 第十冊, 光武十年七月 경상남북도연해어민등이 올린 청원서 및 訓令照會存案 第七十二·七十八冊등의 내용에 산재). 특히 一進會員들은 이미 일본에 충성을 맹세하고 러일전쟁에 참여하여 수천명이 사망하였다고 하는 사실도 일제의 한국지배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黃玹, 梅泉野錄, 隆熙元年 八月 참조).

- 16) 이와 관련하여서는 전계, 日本史史料(近代篇)의 ‘マイエツト 日本農民の疲弊及び其救治策(1891)’, ‘松原岩五郎 最暗黒の東京(1893.11)’, ‘治安警察法(1900.3.10)’의 자료와 李鍾吉, 日帝의 大韓帝國支配過程 小考, 법제연구 제22호, 2002.의 ‘III. 日本의 國內事情과 植民地 確保政策’ 부분을 참조바람.
- 17) 乙巳勒約이후 이완용은 伊藤博文 아래서 學部大臣과 議政府參政大臣을 거쳐 ‘議政府를 內閣으로 改稱하는 件’(詔勅, 光武11년 6월14일)에 따라 勅令 第35號로 ‘內閣官制’ 규정을 정비하게 되면서 1906년6월14일부로 ‘內閣總理大臣 勳二等 李完用’으로 직임을 수행하게 된다. 이후 勳一等을 거쳐 1907년의 정치변란을 정리한 후인 11월2일부터 內閣總理大臣 ‘大勳’ 李完용으로 직임을 수행한다. ‘內閣官制’ 규정을 보면 內閣은 國務大臣으로 조직하고 國務大臣은 즉, 內閣總理大臣及行政各部大臣을 이르며(제1조), 國務大臣은 大皇陛下를 輔弼하야 국정을 掌理하며(제2조), 內閣總理大臣은 國무 대신의 수반이니 機務를 奏宣하야 旨를 承하고 行政各部의 統一을 保持(제3조)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완용은 매국에 기여한 대가로 절대권력적 內閣總理大臣이 됨으로써 明治天皇과 그의 直隸인 伊藤博文을 위해 더한 走狗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 國會圖書館刊, 韓末近代法令資料集 참조.
- 18) 박경식,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지배, 청아출판사, 1986. 24~25쪽 ; 홍순호, 한일외교의 국제관계사적 성찰, 한국학술진흥재단, 1995, 275쪽 ; 이종길, 조선사회법사고, 동아대출판부, 2007, 273~275쪽 등 참조.

伊藤博文은 1906년 2월에 설치한 統監府의 統監이 됨으로서 한국지배의 실질적 책임자가 된다.¹⁹⁾ 이듬해인 1907년 8월에 丁未七條約을 맺으면서 정부 각부의 차관을 비롯하여 중요 공직에 일본인을 임용하고 군대를 해산하는 등으로 한국의 주권을 형해화하는 작업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법을 통해 진행한다.²⁰⁾ 특히 외교권을 탈취해간 乙巳勒約의 부당성을 세계만방에 호소하고자 고종황제는 1907년 4월 20일, 그 해 6월에 네델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이상설 이준 이위종 등 세 명의 밀사를 파견하게 된다.²¹⁾ 이에 앞서 1906년 6월에 고종황제는 9개국 수교국 원수들에게 친서를 보내어 일제가 위협하며 강요한 조약에 황제인 본인이 절대 조인을 허가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조약체결은 마땅히 公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임을 밝히고 있다.²²⁾ 그러나 일제의 책동은 이들의 회의장 출입을 봉쇄하였으며 결국 강국에 의해 자행된 부정의한 국권 침탈행위에 대해 이의 경과와 부당성을 밝혀내는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19) 明治38년 12월 20일 勅令第267號로 統監府及理事廳官制를 다음의 내용으로 공포한다.

“朕은 樞密顧問의 諮詢을 經하여 統監府及 理事廳官制를 裁可하고 兹에 此를 公布 케 함. 明治38年12月20日 內閣總理大臣兼外務大臣 伯爵 桂太郎, 陸軍大臣 寺内正毅”으로 하고, 제2조에서 “統監府에 統監을 置함. 統監은 親任으로 함. 統監은 天皇에 直隸하고 外交에 관하여는 外務大臣을 由하여 內閣總理大臣을 經由, 기타의 事務에 관하여는 內閣總理大臣을 經하여 上奏를 하고 裁可를 받음”이라고 하여 천황에 直隸하는 통감의 지위를 밝히고 있다. 統監府法令資料集(上) 참조.

20) 1907년 8월의 정미칠조약을 통해 한국정부는 시정개선에 관해 統監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제1조) 법령제정과 행정상의 주요 처분에 대해서는 미리 통감의 동의를 받도록 함(제2조)으로써 통감의 내정관여는 국가운영의 핵심부로 들어오게 된다.

21) 乙巳勒約 및 韓日合邦條約에 대한 자세한 경과와 이의 無效論에 대한 집성자료로는 이태진 사사가와 노리가츠(篠川紀勝) 공편, 한국병합과 현대--역사적 국제법적 재검토, 태학사, 2009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로 이태진 교수가 제기하는 乙巳勒約 및 韓日合邦條約 등에 대한 무효론은 조약형식과 체결절차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밝혀내게 된 결과 국권침탈 관련 조약의 원천적 불성립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의 국제법론상 전혀 문제될 바가 없음을 밝히면서 반론을 제기하는 일본의 운노 후쿠주(海野 福壽, 明治大教授)의 주장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2000년 한일문화심포지움-- 과거청산과 21세기의 한일관계]의 제1주제 ‘韓日合拼條約과 韓日協定에 관하여’ 주제발표문과 논평문을 참고하기 바람.

22) 고종황제는 1906년 6월 22일자로 9개 수교국 원수에게 친서를 보내 1905년의 을사늑약이 일제의 만행에 의한 것이며 황제인 본인이 조인을 절대 허가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김기석, 광무제의 주권수호외교--1905~1907, 일본의 대한제국강점, 까치, 1995. 257쪽.

억울함을 겪게 된다. 정의가 멸종되고 무력과 강대국의 이익, 그리고 교활한 외교적 술수만이 평화를 가장하여 정의처럼 통용되는 당시 국제사회의 실상을 뼈저리게 알 수 있는 역사를 목도한다.²³⁾ 그러한 일제는 보복적 차원에서 우리에게 역사상 오욕으로 기록되는 고종황제의 강제퇴위라는 만행을 자행한다.²⁴⁾

이 후 국권탈취에 분노를 안게 된 한국인의 저항을 탄압하기 위해 일제는 内閣總理大臣 李完用 名義로 법률 제1호 ‘新聞紙法’(1906.7.24)을 이어 ‘保安法’ ‘出版法’ ‘警察犯處罰令’ 등의 強壓法을 한국에 移植·制定하면서 한국인의 민족적 저항을 진압하고자 한다.²⁵⁾ 특히 1907년 7월27일에 법률

23) 1907년 6월 15일부터 네델란드 해이그에서 열린 제2차 만국평화회의장에 참석이 거부된 가운데 이루어진 한국인 대표 이위종의 주장을 살펴본다. 이위종은 고종황제의 종손자이자 주미공사를 지낸 이범진의 아들로서 위싱턴에서 4년간을 살았다. 당시 이위종(20세)은 만국평화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닫혀있는 문 앞에서 영국의 평화회의보(편집인은 영국기자 윌리엄 스테드)기자와 만나 대담을 하게 됨으로써 ‘평화회의보’ 7월 5일자 기사로 그 내용을 남기게 된 것이다. 이위종이 기자와 대담형식을 통해 남긴 내용을 요약한다. “흔히 제단이 해이그에 있다고 말하는, 법과 정의, 평화의 신을 혹시 이 곳에서 만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면서 먼 나라에서 왔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 정의란 없군요. 여기 해이그에서 조차도 결국 가증스럽게 당한 치욕을 회복할 길이 없고, 조약이 불법적으로 위반되었다고 항의해도 무시되며, 또한 나라의 독립은 그것의 국제적인 보장여부와 관계없이 침탈당할 수 있는 것임”을 답변하고 있다. 또한 “당신들이 말하는 법의 신이란 유령일 뿐이며 정의를 존중한다는 것은 결치레에 불과합니다. 왜 대한제국이 희생되어야 합니까. 대한제국이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정의, 권리, 그리고 법에 대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 대포가 유일한 법이며 강대국들은 어떤 이유로도 처벌되지 않는 것이라고 솔직히 시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칼이 아니라 법과 정의, 평화의 신을 신뢰하는 다른 나라가 겪을 운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한제국이 주변 강대국들에게 맞서 국토를 방어하기 어려운 나라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대한제국은 구릉 하나하나가 천연요새를 이루는 산악 국가이며, 2000만 우리민족은 극동의 스위스처럼 우리나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이었습니다”라고 열렬히 호소하고 있다. (대한변협신문, 법률가 이준열 사와 기자, 2010.6.21(제309호) 참조).

24) 이태진, 앞의 책. 171~174쪽 참조.

25) 新聞紙法은 국권탈취에 대한 해외밀사사건 등의 저항에 당면하여 1907년 법률제1호로 공포되었다. 警察犯處罰令은 1908년 통감부령 제44호로 공포된 것으로 일본의 警察犯處罰令을 모본으로 한 것이었지만 그 이후 1912년 총독부령 제40호로 공포 시행된 ‘警警察犯處罰規則’을 통해서 완전한 법작동이 이루어졌다. 전체87개항에 달하는 경범죄항목을 구성요건으로 정함으로써 武斷政治 치하에서 조금이라도 不逞하다고 생각되는 한국인을 저인망처럼 포획하는 法網이 되었던 것이다.

제2호로 공포 시행된 ‘保安法’은 고종황제의 강제퇴위와 군대해산 등의 국권침탈에 극렬하게 저항하는 한국민족을 진압할 목적으로 만든 것으로, 통감부가 일본의 治安警察法(명치 33년, 법률제36호)을 모방하여 만든 법이다. 부칙을 포함하여 전체 10개조로 구성되어있는 보안법은 다음의 내용으로 요약 된다. 즉, ①안녕질서를 위하여 결사집회 또는 다중의 운동이나 군중에 대한 제한 및 금지해산 ②안녕질서를 위해 흥기와 폭발물 기타 위험물건의 휴대금지 ③공개장소에서 안녕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 언동의 금지 ④정치에 관한 불온한 동작을 할 염려 있는 자에 대해 거주등을 제한하며 정치에 관한 불온한 언동을 하여 치안을 방해하는 자에 대한 처분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²⁶⁾ 따라서 일제의 한국 국권탈취에 거부하며 의병으로 일제의 부정의에 저항하던 민족선열들은 이러한 법규위반이 처벌의 근거가 되어 가혹한 탄압과 압제에 희생이 되어야만 하였다.²⁷⁾ 일제는 한국민에 대한 민족유린을 예견하면서 강압법을 설정하여 위반 행위를 법에 근거하여 강력하게 탄압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이를 통해 식민지배를 위한 강제병탄으로 이행시켜 가는 경로로 설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26) 野村満, 保安法(光武11年 法律第2號)の史的素描, 司法協會雜誌 第22卷第11號, 1943. 22章. 317~320쪽.

27) 鈴木敬夫, 併合以前の治安法, 韓國法史學論叢, 박영사, 1991. 刑法大全[內亂罪]の適用 및 保安法の適用 참조 요. 그리고 일제가 군대를 동원하여 대한제국 義兵을 殘虐하게 탄압하였던 실상을 담고 있는 자료로써 최근에 간행된 ‘陣中日誌’(全三冊)를 소개 한다. 본 자료는 1907년 7월 대한제국 군대해산이후 일제의 국권침탈책동에 극력 저항하던 한국의병을 탄압하기 위해 일본에서 파견된 일본보병 제14연대가 탄압작전을 수행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일본보병 제14연대는 1907년 7월23일 부대동원으로부터 1909년 6월19일 부대복귀까지 2년여 동안 한국에 파병되어 의병탄압을 주도 한다. 특히 후기의병기인 1907년 이후 주로 영남과 호남지역에서 활약하던 의병을 학살 탄압하던 내용이 日記式으로 상세하게 기록되어있다. 토지주택박물관 연구총서 제15집, 陣中日誌(全三冊), 2010 참조 요.

2. 강제병탄을 위한 한국사회기반 정비

(1) 강제병탄을 위한 사회경제적 기반정비

한국강제병탄의 책무를 부여받은 통감부는 일제의 한국지배를 위해 일본인의 한국진출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게 된다. 일본인의 한국도래는 각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으로, 그 중 일본자본의 보다 자유로운 한국 유입과 생산인력의 한국이주를 위해 제반 법규를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1906년 10월30일 勅令 제65호로 ‘土地家屋證明規則’을 시작으로 동년 12 월28일에는 勅令 제80호로‘土地家屋典當執行規則’을 선포한다. 이를 통해 일본인의 토지매수가 원활하게 되며 그에 따른 소유권보장은 물론이고 부동산을 담보로 高利의 일본상업자본이 한국사회에 자유롭게 침투할 수 있게 된다. 1907년 4월9일에는‘土地家屋賣買典當證明處理順序圖式’을, 1908년 7월 29일에는 ‘土地家屋所有權證明規則’ 등을 선포함으로써 토지 가옥의 소유권 인정과 권리이전이 보다 용이하게 된다. 이어서 바로 ‘東洋拓植株式會社法’을 제정 · 공포(1908. 8.26)하여 토지를 중심으로 한 소유질서의 재편을 기도하면서 취득되는 토지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게 되는 것으로, 동년 12월에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한국에 대한 식민지배를 통한 경제적 탈취의 기초를 굳건하게 한다. 결국 일본인의 한국인 소유부동산의 취득과 일제의 한국지배를 보다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를 점진적으로 구축한다.²⁸⁾ 또한 강제병탄으로 한국의 국권이 일제로 넘어가기 직전에 통감부는 ‘토지조사법’을 제정하여 1910년 8월 25일에 통감부고시 제186호로 공포한다. 이 후 토지조사를 법에 따라 시행하게 되는 것으로, 모든 토지는 지목을 정하여 지반을 측량하고 일구역마다 지번을 붙이게 된다(동법 제2조). 그리고 지목은 田畠·垈·池沼·林野·雜種地 등으로 분류(동법 제3조 제1항)하게 되는 것이다.²⁹⁾

28) 통감부시기의 법제연구와 관련하여, 이 당시의 制定法令들은 사실상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상황에서 한국을 식민지로 하기 위한 예비적이며 기초가 되는 법령의 정비과정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정궁식, 한국근대법사고, 박영사, 2002. 112~147쪽 참조.

29) ‘土地調查法’은 韓國法律 제7호로 隆熙4年 8월23일에 반포된다. 이를 받아 통감부는 “韓國政府는 隆熙四年八月2二十四日 法律第七號로 土地調查法을 勅令第 四十三號로 高等土地調查委員會規則을 公布하였음. 其 譯文 左와 如함. 明治四十三年 八月

또한 어업에 대한 권리와 관련하여서는 1908년 11월에 어업법을 제정하여 원칙적으로 농상공부대신의 허가를 받아서 어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³⁰⁾ 전통어법을 이용한 어업행위에 대해서도 농상공부대신의 허가 없이는 어업행위를 할 수 없게 함³¹⁾으로써 어민들의 삶을 전반적으로 위축시켰으며, 일제로서는 어업에 있어 일본어민과 어선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제도적 기초를 착실하게 수립하는 결과에 이른다.³²⁾

二十五日 <下略> 統監 子爵 寺內正毅”라는 형식으로 한국정부가 반포한 법률을 統監이 公報(明治43年 8月25日 號外)다시 공고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본 법 제7조는 “地主及 土地의 疆界는 地方土地調查委員會에 諮問하야 土地調查局 總裁가 此를 查定함”이라 하여 토지소유와 관련한 土地調查局 總裁의 **查定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隆熙四年八月二十四日(官報는 隆熙4년 8월 29일) 土地調查局告示第2號 土地調查心得을 土地調查局 總裁 高永喜 명의로 고시하여 토지조사법에 따른 토지신고자에 대한 중요규정을 고시하고 있다. 韓末近代法令資料集 (9) 및 統監府法令資料集 (下)참조.

- 30) 漁業法의 주요 규정을 통해 어업 및 어업권에 대하여 이해한다. 제1조 “본 법에서 어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수산 동식물을 採捕 또는 양식을 업으로하는 것을 말한다. 어업권이란 제2조에 의해 면허받은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리고 제2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하려는 자는 농상공부 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1. 일정한 수면에 어구를 건설 또는 부설하여 일정한 어기간에 定置하여 행하는 어업(제1종 면허어업) 등의 내용으로 4개호에 걸쳐 제5종의 면허어업 까지 다섯 가지의 면허어업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 31) 어업법 제9조는 “다음 종류의 어업은 농상공부대신의 허가없이는 할 수 없다”고 하면서 1. 육지 또는 암초등에서 어망을 끌어당기거나 끌어대는 어업으로서 제2조 제1항 제3호의 어업에 속하지 않는 것 2. 풍력 기력 또는 조류를 이용하여 물 속으로 犲網을 끌어 넣는 어업 3. 인력에 의존하거나 또는 기력을 응용하여 어망으로 어류를 애워싸고 어선으로 끌어 올리는 어업 4. 잡수기계를 사용하는 어업 5. 제2조 제2항의 어업으로서 면허 받지 않은 것 등으로 규정하여 한국의 전통어법에 의한 어업행위에 대해서도 허가 없이는 할 수 없게 하였다. 제12조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어업행위에 대해 100원이하의 벌금형과 採捕物과 소지 漁具에 대한 몰수 등의 처벌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32) 일제는 한국을 강제병탄한 다음 해인 1911년 6월에 朝鮮漁業令(制令 제6호)을 공포하여 조선총독의 면허발급을 통해 어업권을 득하도록 하였다. 제1조는 “본 법에서 漁業이란 공공용의 수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수산 동식물을 採捕하거나 양식을 업으로하는 것을 말한다. 漁業權이란 조선총독의 면허를 받은 어업을 할 권리를 말한다. 본령에서 어업자란 어업을 하는 자 및 어업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그리고 면허어업의 종류 등을 조선총독에게 위임하는 것과 함께 면허어업의 제한 정지 및 취소권을 부여하면서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조선어업령을 제정하였다. 일본인의 조선연안 어업진출 및 생산량증대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종길, 朝鮮社會法史攷, 동아대출판부, 2007. 참조 요.

한편 황실재산을 국가재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재정고문인 目賀田를 통해 재정의 문란을 이유로 이의 정리를 단행한다. 宮內府官制改正과 帝室財產整理局官制(1907. 11. 布達第162號)에 따라 帝室有國有及財產調查局 및 整理局을 설치하여 대한제국의 황실재산을 조사하여 이를 국가재산으로 이관함으로써 황실의 권위를 약화시키며 궁극에는 이를 해체시킬 수순을 마련한다. 이로 인해 궁장토, 역둔토, 어업권, 임야, 광산 등의 재산이 度支部 또는 農商工部로 이관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일제 통감부재산으로 변경되며 이를 기초로 식민지 침략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된다.³³⁾

일제는 한국병탄을 강제하며 식민지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수행한다. 관습조사와 어촌사회조사를 대표로 지적할 수 있다.³⁴⁾ 사회 기층에 대한 실상이해는 식민지배 정책의 수립에 너무나 중요한 기초자료이다. 일제는 통감부를 통해 조사를 감행하는데 이에 대해 한국인들은 남의 나라를 자세하게 조사하며 위협하는 그들에 대해 직접 간접으로 저항하면서 저지하려 하였다.³⁵⁾ 그러나 교활함과 위력으로 한국을 침탈해온 그들이기에 한국인의 저항을 제압하고 무마하면서 현지 조사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한국사정과 한국인에 대한 이해를 철저하게 도모하였다. 물론 그 과정에는 그들이 행하는 부당한 조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조하면서 오히려 한국인이 행하는 저항을 저지하는 가운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한국인들이 적지 않게 존재하였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일제의 한국지배는 매우 치밀하고도 일관되게 한국인간에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면서 식민지로 강제병탄을 성취해내겠다는 목표를 향한 단계별 전략을 어김없이 실행하는 집요함이 존재한다.

33) 일례로 수산업에서 앞선 기술과 지식을 확보하고 있는 일제는 1908년 10월에 ‘한일 어업협정’을 강제로 체결하여 한국과 일본의 어민들을 보호 단속한다는 미명하에 일본어민을 보호하면서 한국연안으로의 출어를 장려하게 한다. 그런 다음 11월에는 ‘어업법’을 공포하여 어업을 면허제 또는 허가제로 하여 일본인의 합법적 어장진출을 보장하는 것으로 수산업에 대한 침탈경로를 확보하게 된다.

34) 앞의 각주 4번 참조 요.

35)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한국인의 저항에 대해서는 韓國水產誌 서문 등 참조 요.

(2) 강제병탄에 임박하여 작동하는 주요조치

결국 1909년 7월 6일에는 ‘韓國併合에 關한 件’을 일본각의에서 결정하여 적당한 시기에 한국병합을 단행할 것을 확정한다.³⁶⁾ 일본제국의 한국에 대한 정책은 일제의 실력을 한반도에 확립하는데 있는 것으로, 러일전쟁 개전 이래 한국에 대한 일제의 권력을 점증시켜왔지만 전혀 만족스러운 실정이 아닌 것으로 일제는 이후 한국에 대한 실력을 확고히 하여 반도를 명실공히 일제의 통치하에 둘 것을 결정한 것이다.³⁷⁾ 이러한 결정을 실행하기 위해 ‘對韓施設大綱’을 마련하였는바, 핵심은 한국민의 저항을 봉쇄하기 위해 군대를 증파하며 많은 수의 일본인을 한국으로 이주시켜 일본세력의 근저를 심화하며, 한국에서 근무하는 일본인 관리의 권한을 강화하여 행정관리가 보다 효율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었다.

일제 침략자들의 간교성과 비겁성은 한국인을 이간하고 분열시키는 책동을 능란하게 실행한다. 1909년 말에는 러일전쟁때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온 일진회를 동원하여 회장 이용구를 필두로 백만인 서명을 조작하여 합방성명서를 제출하게 하였는바, 넋을 잃은 매국노들은 일제의 기만책동에 적극 협력하면서 조국을 지키려는 애국인들을 오히려 펫박하며 궁지로 몰아갔던 것이다. 아니 이들은 오히려 앞장서서 이익과 영달을 취하면서 매국적 합방을 요청하기도 하였던 것이다.³⁸⁾

이러한 상황을 조장하면서 식민행보를 가속화하던 일제는 1910년 6월3일 각의에서 ‘합병후 한국에 대한 시정방침의 전’을 결정하여 구체적으로 합병 후 한국에 대한 관리체계를 수립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선총독의 지위를 설정하게 되는 것으로, 총독은 天皇에 直隸하고 조선에 있어 일체의 정무를 통할하게 한다. 또한 이러한 총독에게 大權의 위임에 의거하여 법률사항에 해당하는 명령을 발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그런 한편 일제는 조선에 대한 무력적 힘을 통해 치안을 확보하면서 병합에 반대하거나 방해하는 자들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탄압하는 장치

36) ‘韓國併合에 關한 件’ 및 ‘對韓施設大綱’ 참조 요.

37) 일제통감부는 1909년11월에 ‘統監府司法廳官制’와 ‘統監府監獄官制’를 공포하여 통감부 司法廳과 통감부 裁判所를 설치함으로써 사법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38) 박경식, 앞의 책, 32~33쪽.

를 마련한다. 1910년 6월24일 한국의 경찰사무를 일본에 위탁하는 각서를 강제하여 한국경찰과 일본경찰의 양립으로 인한 업무수행의 어려움, 특히 병합업무의 수행 중 의병의 봉기에 정확하고 민첩하게 대응할 필요를 절실하게 예견하면서 警務機關의 통합을 실행한다.³⁹⁾ 한국경찰관제를 폐지 시킨 일제는 ‘統監府警察官署制’와 ‘朝鮮駐劄憲兵條例’를 칙령으로 제정하여 헌병과 경찰을 일원화한 헌병경찰제를 실시하게 된다. 이로 인해 당시 조선주재 헌병사령관이던 明石元二郎을 총독에게 직속하는 헌병사령관 겸 통감부경무총장에 임명하여 강제병탄절차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될 위험에 대비하는 치안방어체제를 수립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韓國併吞 내용의 공포에 임박한 8월23일에는 統監府警務部令 第3號 ‘政治에 關한 屋外多衆集會를 禁하는 件’을 統監府警務總長 明石元二郎명의로 발포·시행함으로써 강제병탄에 대한 한국민의 정당한 저항을 진압하려는 계책으로 가득하였다.⁴⁰⁾

3. 1910년 강제병탄과 한국식민지배를 위한 주요법제

(1) 강제병탄 직후의 한국지배 상황

한국병합조약은 1910년 8월22일에 작성되고 8월29일에 공포된다. 일제는 이때에도 일본국과 한국 간에 상호행복을 중진하고 동양평화를 영구히 확보하기위한 최선책으로 병합을 단행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전체 8개 조항 중 제1조에서 “한국 황제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하고도 영구하게 일본 황제폐하에게 양여한다”고 하고 제2조에서 “일본국 황제는 제1조에 기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한국을 완전하게 일본 제국에 병합함을 인정한다”고 하여 한국이 행하는 통치권의 양여를 일본이 수락하여 병합하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를 統監 子爵 寺內正毅

39) ‘韓國警察事務委託ニ關スル覺書’ 참조.

40) 統監府警務部令 第3號 ‘政治에 關한 屋外多衆集會를 禁하는 件’의 내용은 “當分間 政治에 關한 集會 又는 屋外에서 多衆의 集會를 禁止함. 本令을 違反하는 자는 拘留 又는 科料에 處함. 本令은 發布日로부터 此를 施行함. 明治四十畠年八月二十三日 統監府警務總長 明石元二郎”으로 되어있다. 統監府法令資料集 (下)참조.

와 内閣總理大臣 李完用이 일본 황제와 한국 황제를 대리한 全權委員의 자격으로 8월 22일에 서명조인하고 있다.⁴¹⁾ 일제는 이렇도록 치밀하게 조약이라는 형식을 통해 완벽하게 병탄을 매듭짓는 犀猾적 행위를 일관되게 실행한다.⁴²⁾ 한국을 병탄하기 위해 얼마나 교묘한 술책으로 조약과 법을 활용하고 강박을 동원하고 매국노를 양산하여 선봉에 세우면서 한국 민의 생명과 膏血과 정신을 앗아가려 하였는가. 결국 일제는 한국의 국권과 국토와 국민모두를 완전하게 그리고 영구히 장악하는 부정의와 파렴치의 극한을 자행한다. 얼마나 일제가 한국의 식민지배를 강하게 열망하였던지를 알게 하는 표현으로, 그들은 한국의 통치권 일체를 ‘완전·영구’하게 양수하는 것으로 적고 있다. 결국 간활한 日帝 그들과 뜻을 같이 하는 역시 간활한 한국의 관료 귀족들은 ‘朝鮮貴族令’을 통해 매국의 댓가로 작위와 은사금 등을 지급받는다. 일제의 조선지배는 침략적 제국주의자인 그들이 대륙진출을 실현하는 과정에 반드시 획득하여야 하는 출입구이자 중요 기지였기에 필연적인 병탄의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었던 것이다.⁴³⁾

‘朝鮮에 施行할 法令에 關한 件’은 1910년 8월 29일 긴급칙령 제324호로 제정 시행되었다가 일본국내의 위헌논의에 봉착하면서 동일한 내용을 의회의 논의 및 동의를 거쳐 1911년 3월에 법률 제30호로 변경하여 공포된

41) ‘韓國併合에 關한 條約’ 참조. 본 조약 제8조에서 “본 조약은 일본국 황제폐하 및 한국 황제폐하의 재가를 거친 것으로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고 함으로써 공포일인 8월 29일부터 발효하게 된 것이다.

42) ‘韓國併合에 關한 條約’은 純宗皇帝가 동의하지 않은 조약이었는바, 이를 순종황제는 1926년 4월 26일崩御직전에 황제의 계를 지키던 궁내대신 趙鼎九에게 구슬하여 遺詔로 남겼으며 두 달여 뒤 미국 샌프란시스코 한국교민들이 발행하는 ‘新韓民報’ 1926년 7월 8일자에 보도되었다. 순종황제는 유조를 남기는 목적을 “병합인준 사건을 폐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본 조약의 형식 및 체결절차상의 흥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태진 앞의 책, 174~180쪽 참조.

43) 이를 은폐하고 기만하기 위해 이때까지 갖은 美辭麗句를 사용하여 체결하고 수립해온 각종의 조약이며 법제 등은 철저히 허위의 것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寺內正毅가 행한 1910년 10월 3일의 訓示에서 “제국의 판도는 바다를 넘어 東西大陸에 미치게 되었고 조선의 개선은 제국 전반의 安寧과 東洋平和를 강화시키는 것인 만큼 조선시정의 성패는 國威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함”을 강조하고 있다. 釋尾東邦, 朝鮮併合史, 715~717쪽 및 박경식, 앞의 책, 참조.

다.44) 법리를 稠密하게 검토하고 관련 법령을 치밀하게 설정하면서 법에 의한 한국병탄을 면밀하게 획책하는 일제의 법 활용수법을 유념하여야 한다. 따라서 한국병탄을 위한 최적의 실행가능시점을 살피면서 한국인의 강제 병탄에 대한 저항을 관련법을 근거로 제압하고 저항을 봉쇄하는 이 간 계략을 일관되게 획책하고 수행한다. 그를 통해 한국을 강제병탄한 일제는 대표자를 조선총독으로 보임하며 총독은 한국을 법에 의하여 통치 할 것으로 구성한다.⁴⁵⁾ 즉, 강압적이며 교활로 가득찬 부정의한 내용을 법으로 포장하여 이를 한국인에게 적용함으로써 한국인에 대한 무단통치를 완벽하게 기도한다. 총독의 입법권 및 통치권의 시발이 되는 법률 제30호 全6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조선에서 법률을 요하는 사항은 조선총독의 명령으로 할 수 있다.

제2조 제1조의 명령은 내각총리대신을 경유하여 勅裁를 청하여야 한다.

제3조 임시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있어서 조선총독은 바로 제1조의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전항의 명령은 發布直後에 勅裁를 청하여야 한다. 만약 칙재를 얻지 못한 때는 조선총독은 즉시 그 명령이 장래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을 공포하여야 한다.

제4조 법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선에 시행할 것을 요하는 것은 勅令으로 이를 정한다.

44) 이러한 변경은 앞서 칙령으로 인정한 조선총독의 입법권위임 문제가 위헌 시비에 봉착하게 되자 일본정부는 이를 의회에 법률안으로 변경 제출하여 의회를 통과하게 됨으로써 법률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 이는 일제가 조선에 대한 식민 지배를 종료하는 때까지 총독의 입법권에 대한 기본 법률로 작용하게 된다. 당시 조선에 있어 법령으로 지목되는 내용으로는 조선에 시행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및 칙령, 칙령에 의해 조선에 시행된 법률, 제령 및 긴급제령, 병탄이후 존속이 인정된 구한국법령, 법률 및 제령의 위임에 따른 명령 등이 된다. 松岡修太郎, 朝鮮に於ける行政權及びその立法權並びに司法權との關係, 京城帝大法文學會 法政論纂 第4冊 참조.

45) 朝鮮總督府官制 제1조는 “조선총독부에 조선총독을 둔다. 총독은 조선을 관할한다”고 하며, 강권을 통한 효과적인 조선지배를 위해 제4조에서 “총독은 그 직권 또는 위임에 의해 朝鮮總督府令을 발하며 일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구류, 2백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의 벌칙을 과할 수 있다”고 하여 일정 행위에 대해 總督府令을 통한 형벌제정을 가능하게 하였다. 朝鮮總督府官制, 朝鮮法令輯覽(上) 참조. 아울러 朝鮮總督의 지위 및 권한 등에 대하여는 김창록 정종섭,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 구조의 성격, 광복50주년기념논문집 권1, 한국학술진흥재단, 1995 참조 요.

제5조 제1조의 명령은 제4조에 의거하여 조선에 시행하는 법률 및 특히 조선에 시행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또는 칙령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제1조의 명령은 制令이라 칭한다.

조선총독은 制令을 통해 한국 지배에 필요한 각종의 법률을 제정할 수 있게 되며 천황의 勅裁만 득하면 완전한 법률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 이러한 조선총독은 천황이 친히 임명하며 법률상 천황에 直隸한다. 따라서 조선총독은 일본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오직 천황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특별한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입법 사법 행정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는 한국통치의 최고 권력자였다. 아울러 총독은 육해군 대장으로 이를 보함으로써 군대를 통해 한국을 관리방비도록 하는 정책지향을 확실히 하고 있다.⁴⁶⁾

(2) 강압적 식민지배정책과 주요법제

한국 병탄과정에서 일제는 이미 신문지법(1907.7) 출판법(1909.2)을 공포하여 신문 및 출판물에 대한 통제를 가하였으며 강제병탄 공포직전(1910.8.28)에 ‘한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 등의 한국인 신문에 대한 발행 금지 조치를 취하였다.

특히 보안법(1907.7)을 공포하여 광범한 의미의 안녕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정치 사회적 결사에 대한 해체를 명하고, 다중의 집회를 금지 또는 제한한다.⁴⁷⁾ 특히 병합직전에는 ‘集會取締에 關한 件’을 공포(1910.8.25)하

46) ‘朝鮮總督府官制’ 제2조 및 제3조 참조. 일제의 法令構造 등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김창록, 식민지 폐지배기 법제의 기초, 법제연구 제8호, 1995 참조 요.

47) 1907년 7월에 제정된 ‘보안법’의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결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제2조 경찰관은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집회 및 다중의 운동 또는 군중을 제한 금지하거나 해산 시킬 수 있다. 그리고 제7조에서는 정치에 관하여 불온한 언론 동작을 하거나 타인을 선동 교사 사용하거나 또는 타인의 행위에 간섭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하는 자는 50이상의 태형, 10개월 이하의 금고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러한 법규정을 통해 일제의 침략행위에 저항하는 개인 및 단체, 그리고 의병들의 행위를 일차적으로 속박하고 탄압하는 근거로 삼게 된다.

여 당시 한국사회에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사회적 계몽을 선도하던 단체들에 대한 해산을 명함으로써 병합에 대한 반대의사가 원천적으로 표명될 수 있도록 하는 계략을 치밀하게 실행한다. 아울러 이를 위해 1910년 9월에는 ‘朝鮮駐箚憲兵條例’를 칙령 제343호로 공포한다.⁴⁸⁾ 朝鮮駐箚憲兵은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 및 군사경찰의 업무를 담당하며(제1조), 조선주차헌병은 또한 육군대신의 관할에 속하고 그 직무의 집행에 대해서는 조선총독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군사경찰에 대해서는 육군대신과 해군대신의 지휘를 받는 것(제2조)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주차헌병은 총독의 지휘 감독 하에 치안유지를 전담하는 조직이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으로 일제는 한국을 강제병탄 한 직후인 동년 9월에 칙령 제358호로 ‘統監府警察官署官制’ 개정을 통해 국가명칭을 바꾸게 된다. 즉, 당시까지 사용하던 우리의 국가 명칭을 ‘韓國’에서 ‘朝鮮’으로 변경함으로써 부지불식간에 우리는 병탄에 이은 또 한 차례의 恥辱을 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한국지배의 책임자인 ‘統監’을 ‘朝鮮總督’으로 변경하였으며 그가 향후 삼십오 년 동안 조선 지배의 최고 책임자로 군림 한다.⁴⁹⁾

일제는 이와 같이 강제병탄을 전후하여 식민침략 및 지배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주도면밀하게 수행한다. 그런 다음 법적 측면에서는 당시 일본 법과 한국에서 작동하던 법에 대한 내용 및 법리검토를 거쳐 1912년을 기점으로 일본의 중요한 법제도를 조선에 이입하면서 충돌과 모순이 없도록 관련 법규를 수정 보완한다. 이를 통해 조선을 식민지배함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인 민법과 형법에 대해 制令을 통해 본격적인 법

48) 韓國駐箚軍의 한국정착과정과 국권침탈과정에서의 역할 등에 대해서는 이태진, 1905년 조약 강제시의 韓國駐箚軍의 성격, 한국사론 제54권, 2008.6. 참조 요.

49) 물론 이를 위해 일제는 1910년 7월에 마련한 ‘한국병합처리방안’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는 한국을 강제併吞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문제들에 대해 기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가장 먼저 국가명칭에 대해서는 ‘한국’을 ‘조선’으로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제1). 그리고 입법사항에 관한 긴급칙령안을 통해 조선에서 법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선총독의 명령으로 규정할 수 있게 하며 이러한 조선총독의 명령을 制令이라 칭하는 것(제17)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총독부 설치에 관한 칙령안에서는 조선에 조선총독을 두고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육해군을 통솔하여 일체의 정무를 통할하도록 한다(제18)는 등의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朝鮮總督府刊, <韓國ノ保護及併合>, 1917. 및 박경식, 앞의 책, 567~569쪽 참조.

이식을 이루어낸다. 1912년 3월에 공포하여 4월1일부터 시행이 이루어진 朝鮮民事令(制令 제7호)과 朝鮮刑事令(制令 제11호)은 일제 그들의 기본 법을 한국사회에 전면적으로 이식시켜 들어오게 한 대표적 制令이다.⁵⁰⁾ 이로 인해 일반 민중의 일상생활에서 민사적 형사적 관련영역의 삶은 전반적으로 일제가 만든 일본민법과 형법을 적용 받게 된다. 그러나 일제는 朝鮮民事令 제11조를 통해 “제1조의 法律中 能力 親族及相續에 관한 规定은 朝鮮人에게 此를 適用치 아니함. 조선인에 關한 前項의 事項에 對하여는 慣習에 依함”이라고 하여 (법률)행위능력과 친족 상속 등의 가족법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일본법의 적용을 억제하는 규정을 만들어 넣고 있다.⁵¹⁾ 사회마다 자연스럽게 생성되고 지속되어 온 가족과 가족집단의 특별성으로 인하여 행위능력 및 가족구성원 간의 권리 의무내용에 대해 일제가 자기들의 법을 강제로 이식하는 것이 너무나 합당하지 않음에 대한 일제적 반영이었다. 더욱이 강제병탄을 통해 강압적 식민 지배체제를 운영하던 지배초기의 일제는 가족관계까지 한국인의 관습을 무시하면서 일제의 법을 강제할 경우 예상되는 저항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대응모색의 결과이기도 하다.⁵²⁾

-
- 50) 朝鮮民事令과 朝鮮刑事令은 서문에서 공히 “朝鮮民事令(朝鮮刑事令)을 明治四十四年 法律第三十號 第一條及第二條에 의하여 勅裁를 得하고 兹에 此를 公布함”이라고 하여 앞에서 말한 법률 제30호에 기초하여 법령을 공포함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물론 기타 朝鮮笞刑令(明治四十五年 制令第十三號)이나 朝鮮監獄令(明治四十五年三月 制令第十四號) 등의 법령에도 서문에서 이를 명기한 다음 본문의 내용을 적고 있다.
- 51) 朝鮮民事令은 부칙을 포함(제77조내지 제82조)하여 전체 8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同 朝鮮民事令 제1조에서 “民事에 關하는 사항은 本令 其他の 法令에 特별한 规定이 있는 경우를 除하는 外에 左의 法률에 의함”이라고 하여 左의 法률로 一. 民事七. 民法施行法 八. 商法 十. 商法施行法 十三. 民事訴訟法....二十二. 供託法 二十三. 競賣法 까지 전체 23개의 법률을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민사령 제11조는 이들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조선인에게 있어서는 능력과 친족 상속 관련 사항에 있어서는 위의 23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적용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조선의 관습에 의할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 52) 이에 대해서는 일제의 조선지배에 대한 시기별 단계별 이해가 요구된다. 궁극적으로는 皇民化政策 및 創氏改名 등과 併를 같이 하여야 하는 것으로 초기와 후기의 식민지배정책 및 침략전쟁의 차이와 그 변화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 즉, 일제는 점진적으로 가족관습 등에 대한 총독부 법정국의 회답, 조선고등법원 판결 등을 통해 관습을 창출해 내는 한편, 일본제국주의의 대륙진출과 대동아전쟁책동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필연적으로 조선민사령의 개정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결국 임시적이

(3) 朝鮮笞刑令과 관련 형사법제

조선형사령 부칙 제42조에서는 舊韓國法規에서 시행하던 형을 다음의 열 가지로 정리하였다. ①死刑(舊韓國法規上의 명칭은 死刑. 이하 괄호 안은 구한국법규상의 표현임) ②無期懲役(終身役刑) ③無期禁錮(終身流刑) ④有期懲役(十五年以下의 役刑) ⑤有期禁錮(十五年以下의 流刑 또는 禁獄) ⑥罰金(罰金) ⑦拘留(拘留) ⑧科料(科料) ⑨沒收(沒入) ⑩二十日以下의拘留 또는 科料(笞刑)로 한 것이다. 특히 조선형사령은 한국사회의 전통적 형벌인 ‘笞刑’을 없앰으로써 형벌에 있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형벌 고통을 완화하면서 형벌체계와 내용을 전반적으로 근대형법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형식적이나마 변화를 도모하였다.⁵³⁾ 그러나 이러한 형사법의 개선방향과 태형폐지는 한국인에게는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써, 한국인에게만 적용되는 법령으로 ‘朝鮮笞刑令’(明治四十五年 三月 制令 第13號)을 제정 하여 4월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⁵⁴⁾ 특히 朝鮮笞刑令은 그 적용대상을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朝鮮人 男子’로 한정함으로써 법으로서 갖추어야하는 최소한의 보편성도 무시하면서 강제병탄으로 인한 식민지배에 저항하는 한국인 청장년 남자들을 철저하게 탄압할 것을 목적으로 있는바, 포괄적 임의적 내용으로 법문을 구성하고 있다. 전체 13개 조문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三月以下의 懲役 또는 拘留에 處함이 可할 것은 그 情狀에 의하여 答刑에 處함을 得함

제2조 百圓이하의 벌금 또는 科料에 처함이 가할 자가 左의 각호의 一

며 가식적인 조선민사령 제11조는 식민지배의 공고화와 무력증강이 현실화되는 식민지배의 후기로 갈수록 그런 가식을 견어내면서 본질을 法文으로 드러내게 된다. 즉, 한국인에게 皇國臣民이라는 수사를 붙이면서 비장해왔던 본질인 전쟁도구로서의 한국인과 한국지배를 한국인 말살과 결합시켜 공개적으로 실행하게 되는 것이다. 자세한 논의는 본고 제4장 創氏改名부분에서 논의하는 자세한 내용을 참조바람.

53) 따라서 조선형사령 제43조 제2항에서는 答刑에 처해지는 자에 대해서는 答 五를 拘留 一日로 환산하는 규정을 두고있다.

54) 한국인에 대한 대표적 ‘不法的 法律’인 朝鮮笞刑令은 3.1 민족독립운동을 겪은 이후인 1920년 3월 제령 제5호로 폐지된다.

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정상에 의하여 箴刑에 처함을 득함

一. 朝鮮內에 일정한 주소를 有치 아니하는 때

二. 無資產으로 認定 한 때

제3조 百圓이하의 벌금 또는 科料의 言渡를 받은 자는 그 言渡確定後 五日內에 此를 완납치 아니하는 때는 檢事 또는 卽決官署의 長은 그 情狀에 의하여 箴刑으로 換함을 득함. 但 箴刑執行中 아직 집행치 아니하는 箴數에 상당하는 罰金 또는 科料를 납부한 때에는 태형을 면함.

제4조 본 령에 의하여 태형에 처하거나 또는 罰金 혹은 科料를 箴刑으로 換하는 경우에는 一日 또는 一圓을 箴一에 折算함
그 일원에 미만하는 것은 이를 箴一에 계산함. 단 태는 다섯 대 이하를 불허함

제5조 태형은 十六歲以上 六十歲以下의 男子가 아니면 이를 과할 수 없음

제8조 태형의 연도를 受한 피고인이 朝鮮內에 일정한 주소를 有치 아니하거나 또는 逃走의 虞가 있는 때는 檢事 또는 卽決官署의 長은 此를 監獄 또는 卽決官署에 留置함을 득함.

제11조 태형은 監獄 또는 卽決官署에서 秘密히 此를 집행함.

제12조 태형의 時效는 각 本刑에 대하여 定한例에 의함.

제13조 本 令은 朝鮮人에게 限하여 此를 적용함.

이와 함께 ‘朝鮮監獄令’을 같은 시기인 明治45年 3월에 制令 제14호로 제정하여 4월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조선감옥령에 의하여 감옥사무 전반에 대한 내용은 일제의 監獄法에 따르게 되지만 한국인에 대한 탄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과정에 너무나 중요한 기관이 감옥이기 때문에 이를 같은 날에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는 것이다.⁵⁵⁾ 조선감옥령은 “감옥에 관한 사항은 본령 기타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한 외에

55) 전체 5개조문으로 되어있는 ‘朝鮮監獄令’ 중 제3조는 “拘置監에는 箴刑의 집행을 受함이 可할자를 留置함을 득함”이라고 하여 특별히 조선태형령에 의해 태형에 처할자를 유치할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는 감옥법에 의함”⁵⁶⁾이라고 하여 감옥사무에 관한 기본법으로 일제의 監獄法이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특별히 조선인에게 적용할 사항에 대해 구분되는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감옥수용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가출옥을 가능하게 하되 그에 대한 통제와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假出獄取締規則’을 제정한다. 이 규칙은 총독부령 제33호로 발령된 것으로, 시간적으로는 앞의 制令들과 같은 명치45년 3월에 제정하여 동년 4월1일부로 시행된다. 전체 22개조로 구성된 ‘假出獄取締規則’의 주요 내용은 경찰관서를 중심으로 假出獄者에 대한 감시와 감독, 일제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구성하고 있다.⁵⁷⁾

이와 함께 경찰이 포괄적으로 한국인을 체포하고 처벌하는 규정으로는 ‘警察犯處罰規則’이 있다. 경찰범처벌규칙 역시 명치 45년 3월에 총독부령 제40호로 제정된 것으로 시행은 동년 4월1일부터이다. 경찰범처벌규칙은 제1조에서 “左의 각호의 一에 해당하는 자는 拘留 또는 科料에 처함”이라고 한 다음 무려 87개항의 행위 유형을 설정하여 일상의 행동이 여기에 저촉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⁵⁸⁾ 경찰범처벌규칙의 설정은 한

56) ‘朝鮮監獄令’ 제1조. 또한 제5조에서는 “在監者에게는 糧食의 自辦을 許함을 得함”이라고 하여 수감자의 식량조달을 스스로의 능력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7) ‘假出獄取締規則’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假出獄을 허가받은 자(被許)는 住居地를 管轄하는 警察署(警察分署와 警察署의 事務를 取扱하는 憲兵分隊와 憲兵分遣所를 포함함. 이하 같음)감독을 受함. 제2조 典獄이 가출옥을 허가받은 자를 釋放하는 때는 그 뜻을 가출옥을 허가받은 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검사, 刑의 言渡를 한 재판소의 검사와 감독경찰서에 통보함이 可함. 석방을 받음이 可할 자에게 교부하는 증표에는 주거지와 감독경찰에 도착할 만한 기한을 정하여 此를 기재함이 可함. 제3조 가출옥을 허가받은 자는 前條에 의하여 證票에 기재된 기한까지에 감독경찰서에 출두하여 증표에 認印을 受함이 可함. 제4조 가출옥을 허가받은 자는 지체없이 감독경찰서에 직업 기타생계에 관한 見込(계획)을 세워서 차를 届出함이 可함. 가출옥을 허가받은 자의 보호를 引受한 자가 있는 때에는 前項의 届出에는 連署를 요함. 제5조 감독경찰서는 가출옥을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正業에 就하고 선행을 保케하기 위하여 필요한 훈시를 하거나 또는 此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명함을 得함. 前項의 명령을 發한 때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검사와 석방한 감옥에 통보함이 可함.

58) ‘警察犯處罰規則’ 제2조에서는 “本令에 규정한 위반행위를 教唆하거나 또는 幫助한 자는 前條에 비추어(照) 此를 罰함. 但 情狀에 의하여 그 刑을 면제함을 득함”이라고

국인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것에 모아지고 있다. 한국인의 생각을 위축시키고 행동을 제약하며 한국인들은 단지 일제가 요구하고 명령하는 데로 따르기만 하여야 하는 존재로서 그 이상의 어떠한 초과행위도 불허하는 내용으로 조밀하게 구성하고 있다. 이렇듯 일제식민지배는 법을 통해 한국인에 대해 일상적 삶과 행위마저 植梏으로 가둬두려 하였던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일제는 朝鮮總督府令 제41호를 명치45년 3월에 발하는 것으로, 左의 各 號에 해당하는 자는 三月以下의 懲役 또는 百圓이하의 罰金 또는 拘留, 科料에 처한다고 하면서 다음의 네 개항을 규정하고 있다.

- 一. 사망의 신고를 하지 않고 埋葬을 한 者
- 二. 개업의사나 산파로서 無故히 病者, 嫣婦 또는 產婦의 부름에 응하지 않는 자
- 三. 전염병예방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시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
- 四. 경찰관서 또는 사무를 취급하는 관서의 허가를 得하지 아니하고 화약류 기타폭발할 만한 물품을 수수, 운반 또는 저장한 자.

이러한 총독부령 역시 같은 해인 1912년 4월1일에 시행하게 됨으로써 일련의 한국인 통제법제가 4월1일을 기해 연계하여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총독이 발하는 법률수준의 制令을 통해서는 기본된 법제들을 구축하게 되었으며, 총독부령을 통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야기되는 조선인들의 행위에 대해 경찰이 언제나 통제하며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규들을 정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정도의 법제정비는 일제의 식민병탄을 수행한 초기의 기초내용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 후 일제는 단계를 더하면서 법을 더욱 교묘하게 그리고 탄압의 강도를 더하면서 식민지수탈과 대륙진출을 향한 진전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결국 이러한 식민초기의 법정비 과정을 거쳐 그들이 한국에서 기도한 한국식민지배의 궁극적 모습은 한국민족의 혼을 강압적 또는 기만적 수법을 통해 소멸시키는 것이며, 그런 다음 한국인으로 하여금 한국인은 일

하여 광범하게 설정한 구성요건에 대해 자세한 형별기준과 구분이 없는 가운데 교사 및 방조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본인과 같은 것이라는 기만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형성된 위장된 ‘內鮮一體’의식을 기초로 일제는 자신들이 필요한데로 한국과 한국인을 자의적으로 유린하고 이용하며 취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면서 도구적 노예로 예속시키려 하였던 것이다.⁵⁹⁾

III. 1920년대까지의 한국민족말살을 위한 주요법제와 정책

1. 식민지배초기의 정보봉쇄를 위한 법제

일본제국주의자들은 한국을 식민지배하면서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이며 주체적인 의식을 파괴하고 한국인이 가질 수 있는 자긍의 요소들에 대한 점진적 소멸을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있다.⁶⁰⁾ 이는 식민지배를 통해 단순히 국권을 침탈하고 피식민국이 가지고 있는 부와 자원을 탈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일반적 식민지배와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 역사적으로 일제는 이미 조선지배를 통해 섬나라라는 한계성을 극복하고 보다 넓은 대륙과 소통하며 나아가서는 침략전략을 자유롭게 실행하려는 역사적 숙제로부터 기인한다. 그래서 일제의 한국지배는 19~20세기 초에 일어나는 열강의 식민지배 책략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역사적이며 숙명적 과제의식에서 비롯한다. 단순히 원재료 및 시장확보라는 경제적 이익침탈로 정형화된 식민개척론과는 차이를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일제가 숙명처럼 생각하는 한국식민은 처음부터 지배단계와 정도를 조절하면서 한국을 완전하게 지배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결국 한국민족의 주체성 및 고유성을 말살하는 것이었다. 방법으로는 무단통치에 의한 탄압

59) 朝鮮總督時代資料, 齋藤實文書2, ‘朝鮮總督府官制改革ニ關スル勅語’(大正八年(1919)八月)참조.

60) 한국인의 민족성과 역사에 대한 부정적 관념, 그리고 일제의 한국식민지배의 당위성 등을 학문이란 이름을 통해 체계적으로 구축한다. 당시 일본의 유명 연구자자들이 열심히 주장하던 내용에 대해서는 이기백 책임편집, 한국사시민강좌 (창간호), 일조각, 1987. 참조 요. 여기서는 [식민주의사관비판]을 대주제로 반도적성격론비판(이기백), 정체성이론비판(강진철), 당파성론비판(이태진), 그리고 일본에 있어 한국사연구의 전통(旗田魏)등의 내용을 특집으로 논의하고 있다.

책과 교활함과 기만을 내장한 회유책을 통해 민족적 주체성과 독립성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다. 일제는 한국민족의 독립성 내지 독자성을 절멸시킨다는 궁극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어느 시기 어떤 술책도 소홀함이 없이 지배의 전 시기를 탄압과 회유를 병용하면서 간악으로 일관한다. 중요한 것은 학술적 연구를 동원하여 근원적으로 민족성·역사성에 대한 부정과 식민현실에 대한 긍정을 유도하며, 교육을 통해 자신과 민족에 대한 부정을 내면으로부터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일제는 한국민족의 말살을 위하여 강제병탄 전부터 이미 일제 자신의 부당한 침략행위에 대해 정보를 게재하는 신문 및 출판물에 대한 탄압과 발행금지를 책동한다. 사회변화와 함께하는 교육기회확대는 점차 개개인의 의식을 일깨운다. 당시 한국사회의 한국인들은 부당하고도 엄중하게 전개되는 사회변화를 목도하면서 그 근원과 내용을 알고자하는 각성이 일었으며 그러한 변화에 대한 정당함과 부정당함, 그리고 그에 대한 내용을 바르게 알고 바른 판단을 하고자 하였다. 이에 도움을 주는 한편 변화 상황에 대해 즉시적·직접적이며 분석적으로 내용을 전해주는 매체가 바로 신문이며 잡지이다. 또한 이를 해독할 수 있도록 문자를 가르치고 기본된 지식을 함양하게 하는 기관이 바로 교육기관이다. 언론과 교육은 그래서 사회변화를 주도하는 중심축이 되는 것이다.

일제는 이에 대해 식민지배책에 기초하여 탄압을 가해오게 되었는바, 거리낌 없이 전면적으로 활용하는 사회적 機才가 바로 법령이었다. 일제는 법을 활용하여 한국사회를 부당하게 裁斷하고 개인의 권리를 압박하는 것으로 법실증주의가 안고 있는 부정적 기능을 최대한 활용한다. 결국 일제식민지배 법제는 입법목적이 이미 부정의를 위해 설계된 것이었으며, 시행에 있어서도 부정의에 적극 협력하는 일관된 집행을 이루어냄으로써 악법의 전형으로 간주된다.

경술년의 강제병탄 이전부터 일제는 언론을 압박하는 법제를 제정한다. 통감부시기인 1907년7월에 新聞紙法을, 1908년4월에는 新聞紙規則을 공포하여 기밀사항에 관한 관청의 문서나 의사내용 등을 당해 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고는 절대 게재할 수 없도록 하였다.⁶¹⁾ 또한 치안을 방해하거나

풍속을 교란하는 사항, 공공관청의 문서 및 議事에 관한 사항, 공판에 회부되기 전의 중죄 및 경범죄의 예심에 관한 사항과 방청을 금한 재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신문에 기재할 수 없게 하였다.⁶²⁾ 1909년2월에는 出版法을 제정하여 文書·圖畫 등의 출판에는 저작자(또는 그의 상속자) 및 발행인은 공동으로 원고본을 제출하여 지방장관을 경유하여 내부대신에게 許可를 신청하여야 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를 어기고 문서 또는 도화를 출판하게 된 경우에 대한 처벌 역시 엄하게 규정하고 있다. 國交沮害 및 政體를 變壞하거나 國憲을 문란케 하는 문서 또는 도화를 출판한 경우는 3년 이하의 役刑을, 외교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경우는 2년 이하의 역형을, 위의 두 경우 외에 안녕질서파괴 또는 風俗壞亂의 경우는 16개월 이하의 禁獄에 처하는 등으로 벌칙을 규정하였다.⁶³⁾ 이렇게 신문과 잡지의 출판을 봉쇄하면서 韓國民을 앓아 없어야하는 사람들로 몰아간 끝에 韓國併吞을 이뤄내고자 하였는바, 일제가 장담하던 동양평화와 한국인의 복리증진 등을 허구이며 더욱이 그를 위한 정책과 법의 설정은 원천적으로 설정될 수 없었던 것이다.⁶⁴⁾

保安法은 1907년 7월에 제정된 것으로, 내부대신은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결사의 해산을 명하며, 경찰관은 역시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집회군중을 해산 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⁶⁵⁾ 특히 제7조

61) 신문지법 제12조. 이에 위반하는 경우 발행인 및 편집인은 10월 이하의 禁獄, 또는 50圓이상 百圓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동법 제27조)으로써 일제의 국권침탈과정을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봉쇄책을 마련하였다.

62) 신문지규칙 제10조 참조.

63) 출판법 제2조 및 제0조 참조.

64) 이러한 법규를 근거로 1910년 당시 발매금지된 신문은 외국인이 발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총255건에 이른다. 당시 발매금지된 국내신문으로는 황성신문 국민신문 한양신문 대한매일신보 대한민보, 경향신문 제국신문 등이며, 출판법에 의하여 애국적이며 독립사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서적은 발행될 수 없었는바, 대표적 서적은 다음과 같다. 즉, 초등대한역사 초등본국역사 동국역사 대동역사략 민족경쟁론 국민수지 애국정신 을지문덕 이순신전 동국사략 면암문집 여자국문독본 프랑스혁명사 청년입지전 미국독립사 월남망국사 폴란드망국사 등이 있다. 小森德治, 明石元二郎 (上), 臺灣日日新報社, 1928. 491쪽 및 박경식, 앞의 책, 139쪽 참조.

65) 보안법 제1조 및 제2조 참조.

에서는 정치에 관하여 불온한 언론 동작을 하거나, 타인을 선동 교사 사용하거나 또는 타인 행위에 간섭하여 치안을 방해하는 자는 50이상의 태형, 10월 이하의 금고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결국 伊藤博文이 주축이 되어 이루어낸 1907년 만국평화회의장 한국대표 참석봉쇄와 고종황제 강제퇴위 등의 국권농단을 한국인들이 강력하게 저항하는 상황에서 일제의 강압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보안법은 1910년 강제병탄 직후에 규정을 정비하여 정치적 결사를 모두 해체시킨다. 애국단체인 西北學會 大韓協會 政友會 등은 물론이고 一進會 平和協會 등의 친일단체도 해산한다.⁶⁶⁾ 강력한 무단통치 체제 구축을 위한 정비과정이 되는 것이다.

2. 교육에 대한 식민지배정책 기조

교육에 대한 탄압 또한 대단히 치밀하였다. 대한제국의 개창 전후부터 1900년대 초에 걸쳐 한국은 전통방식의 서당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근대적 서구교육을 열심히 수용하면서 자주독립과 문명개화를 향한 교육을 전국적으로 시행하였다.⁶⁷⁾ 그러나 일제는 이러한 우리의 교육환경 육성에 대해, 일시적인 교육열의 발흥으로 각지에서 학교가 濫設되고 불량한 교과서를 사용하고 불온한 사상을 주입하여 적개심을 고취함으로써 온건하고 실질적인 美風과 勤儉力行하는 良俗이 중단되고 있다고 지적한다.⁶⁸⁾ 일제는 통감부 설치 이후에 문명적 교육을 내세우며 일본어와 실무 교육을 중시하는 교육간섭을 시작한다. 따라서 人間尊嚴姓性 자각이나 民族性昂揚, 정치성을 띠는 교육을 철저히 배격하는 원칙을 가지고 한국사회의 교육을 재단하였다. 1908년 7월 칙령 제62호로 공포된 ‘사립학교령’에서는 학부대신이 사립학교를 설립 또는 폐쇄할 권한을 가지며, 사립학교의 교과용도서는 학부대신의 검정 또는 인가를 거치도록 제도화하였

66) 박경식, 앞의 책, 139~140쪽.

67) 손인수, 한국개화교육연구, 일지사, 1985; 김준철, 일제하의 한국민족자본과 민족사학에 관한 연구, 상조사, 1984 등 참조 요.

68) 李淑子, 日本統治下朝鮮における日本語教育--朝鮮教育令との関連において--, 朝鮮學報第75輯, 1975 참조.

다.⁶⁹⁾ 서당에 대해서는 ‘서당에 관한 훈령’을 반포하여 재래의 서당은 한문을 가르쳤지만 일본어(국어)가 필요한 현시점에서는 일본어도 같이 가르치도록 하였으며, ‘學會令’을 통해서는 역시 學部大臣이 이에 대한 설립허가 및 취소권을 갖는 것으로 하여 政事에 대한 어떠한 관여도 금지시킴으로써 일제가 추구하는 식민지배를 위한 구상을 교육의 장에서 전혀 논의 할 수 없게 하였다.⁷⁰⁾ 특히 한국교육에 있어 첫째가는 痘根으로서 교육의 정치문제에 대한 관여를 집요하게 지적하는 한편, 한국교육이虛를 버리고 實을 취함에 귀착되어야 한다면서, 일제 자신들이 은밀하고도 비겁하게 수행하는 국권침탈에 대한 국민의 公憤을 이렇게 교육의 정치문제 관여로 호도하는 간악함을 버젓하게 행한다.⁷¹⁾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虛學은 한국인에 있어서는 진정 實學인 것이다. 자주를 상실하는 가운데 터득하는 실학은 단순한 근대주의에 매몰되는 도구일 뿐으로서, 일본제국주의 침략자들을 위한 하급의 실무자양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며 결국 그들 부정의한 식민지배자들을 위해 충실히 도구로서의 노예교육이 되는 것이다.⁷²⁾

경술년 강제병탄으로 총독이 된 寺內正毅는 교육을 통해 한국인의 제국에 대한 저항이 증폭될 것을 염려하면서 절대 조선민족의 독립사상이 고취되지 못하도록 단속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조선인의 행복이 독립을 통해 가능할 것인지를 지적하면서, 만일의 경우 조선인이 저항을 한다면 일본은 이를 실력으로 진압할 것이며 이로 인해 일본인의 고통은 전무하지만 조선인은 불이익을 크게 받게 될 것임을 밝히고 있다.⁷³⁾ 이는 총독이 교육과 관련지어 施政方針을 한국인탄압에 두고 있음을 피력하는 것 이 된다. 이러한 기조는 1911년 8월에 조선에 있어 교육에 관한 기본법인

69) 1908년 8월에 칙령 제62호로 공포함. 동 사립학교령 제1조 내지 제5조 참조 요.

70) ‘學會令’은 1908년 9월에 공포되었다. 동 학회령 제1조에서는 학회를 교육 및 학예의 보급 발달을 꾀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정의 하고, 제5조에서는 이러한 학회는 영리사업을 하거나 政事에 간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71) 1908년 7월28일 曾彌荒助 副統監이 官立普通學校 校監會議席上에서 이러한 내용을 강연하고 있다. 高橋兵吉, 朝鮮教育史考, 帝國地方行政學會 朝鮮本部, 1927. 140쪽 참조.

72) 姜在彦, 朝鮮の開化思想, 岩波書店, 1980. 352쪽 참조.

73) 大野謙一, 朝鮮教育問題管見, 朝鮮教育會, 1936. 31~50쪽.

‘朝鮮教育令’으로 정비된다. 동령은 교육에 관한 勅語의 취지에 기초한 忠良한 국민 육성을 本義로 하며(제2조), 교육은 時勢에 따라 民度에 적합할 것을 기하여야 하고(제3조), 교육을 대별하건데 보통교육과 실업교육, 전문교육으로 나누고 있음(제5조)을 규정하였다.⁷⁴⁾ 중요한 것은 이들 중 조선에서의 교육중심은 公立普通學校에 있다는 것이다. 보통학교교육을 충실히 하여 총독정치의 본지를 완수함에 있음을 독려한다. 따라서 졸업하면 바로 실무에 종사하게 되는 만큼, 근면 성실하여서 힘든 일을疏어하지 않으며 국어를 구사할 줄 알고 또 실제적 지식기능을 소유한 忠良한 臣民을 양성함이 本旨임을 명백하게 하고 있다.⁷⁵⁾ 이러한 기조는 시간을 더하면서 식민지배체제를 더욱 확고히 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결국 이 후 일제가 행하는 교육법령개정은 제국에 충성하는 신민 양성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일본어 교육을 강화하면서 애국독립사상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봉쇄하는데 초점을 맞춘 노예화교육을 실행하는 것이었다.⁷⁶⁾

3. 1920년대의 식민지배를 위한 주요 법제 및 정책실상

(1) 3.1 민족독립운동과 문화정치

일제는 한국을 강제병탄한 다음 명칭을 ‘조선’으로 변경하고 식민지배 체제를 본격화 한다. 강압적 무단통치를 거리낌 없이 행하는 일제에 저항하여 한국민족은 1919년에 민족독립을 요구하는 3.1운동을 일으킨다. 일제는 경술병탄 후 한국 식민지배정책의 기조를 同化主義로 변경하면서

74) 朝鮮教育令에서 대별하고 있는 보통교육과 실업교육, 전문교육에 대해 적어둔다. 보통교육은 보통의 지식기능을 전수하고 특히 국민다운성격을 함양하고 국어를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5조), 실업교육은 농업 상업 공업에 관한 지식기능을 전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제6조), 전문교육은 고등의 학술 기예를 전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7조)고 하여 각각의 내용을 분류하고 있다.

75) 당시 내무장관 宇佐美勝夫의 訓示내용중 일부이다. 그는 이어서 보통학교의 목적은 결코 졸업생이 중학 대학으로 진학하여 학문을 연구함에 있지 않음을 단정하면서, 忠良한 臣民으로서 역할 하는 조선인을 강조하고 있다. 朝鮮總督府學務局編, 朝鮮教育要覽. 26쪽 참조.

76) 박경식, 앞의 책, 154~159쪽.

한국인을 그들의 지시와 지배에 무조건 순응하여야 하는 것으로 강박하였다. 이견 없고 반대 없는 노예적 순응을 同化政策으로 간주한 일제는 법 정책에 있어 일본과는 다른 법을 제정하거나 다른 내용으로 편성하여 한국에 차별 적용하는 지배 기술을 시행하였다.⁷⁷⁾

현병경찰을 동원한 치안유지 책략은 한국인을 공포와 굴종으로 무력화하고자 하였으며, ‘朝鮮笞刑令’과 ‘警察犯處罰規則’ 등을 통해 한국민중을 억압적 노예로 몰아갔던 것이다.⁷⁸⁾ 이에 대한 저항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그 시점이 민족적 울분이 가장 잘 표출될 수 있으며 결집의 명분 또한 가장 적절한 시점인 고종황제의 因山日로 선택한 것이다. 일제의 부정당한 식민지배에 대해 한국민족은 인도주의적 양심에 기초하여 비폭력적 저항으로 그의 중지를 요청하였지만 간악한 일제의 식민지배 책동은 강력한 무장력에다 실정법규를 동원하면서 합법을 내세운 살상과 진압을 자행하였던 것이다.⁷⁹⁾ 일제가 한국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강조해

77) 프랑스가 식민지에 시행한 ‘同化主義’는 식민지의 문명개화를 도모하면서 식민지에 본국에서 시행하는 법률과 같은 법 및 관료조직, 사회제도 등을 이식시켜 적용하는 통치방식으로 설명된다. 이에 대해서는 이지원, 일제하 민족문화인식의 전개와 민족문화운동--민족주의 계열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참조 요.

78) 현병경찰의 횡포는 조선인의 기본적 인권도 유린하는 것으로 조선인은 식민지노예 그 자체였다. 한국과 같이 관료의 발호가 극심한 나라는 없다. 그들이 자의적으로 남용하는 총독부령이라는 것은 보는 이로 하여금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한다. 조선 민중은 관청의 허가 없이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바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벌금에 처한다.(<現代史資料>26, 朝鮮 2, みすず書房, 1973. 660쪽). 그리고 현병에 대한 내용으로, 조선의 현병이라는 것은 행정 사법 양부에 걸쳐 그 권력을 가질 뿐 아니라, 학자의 영역에 속하는 언론에 대한 지도, 교육가의 영역인 사회풍속의 개선, 흥신소가 담당할 신용조사업무, 실업가의 영역인 경제에 관한 연구 등 모든 영역에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었다.....지방에 가면 현병에 대한 원성이 더욱 심하다. 도로를 개설하는데 현병이 책상에서 계획해서 도로를 결정한 다음 민중의 토지를 몰수하고 노동력을 무상으로 사역시키는 등의 관헌의 행위에 대해 어떠한 이설도 제기할 수 없다. 조선인들은 현병의 압제를 면하기 위해 오히려 원한어린 현병에게 頌德碑도 세워준다. ‘某憲兵不忘碑’는 무자비한 현병의 봉동이를 피하고자 아첨으로 조선민중들이 세운비석이다 (中野正剛, 我か觀たる滿鮮, 政教社, 1915. 51~55쪽).

79) 전 민족이 봉기하여 부당한 일제의 식민지배를 거부하며 오로지 민족의 독립을 요구한 삼일민족독립운동에 대해 일제는 保安法, 出版法, 刑法上의 騷擾罪, ‘政治에 關한 犯罪處罰의 件’(制令제7호)등의 위반을 이유로 제1심에서 유죄를 결정하고 있다. 특히 ‘政治에 關한 犯罪處罰의 件’(制令제7호)은 3.1독립운동 발발 후인 4월15일에 일제가 이를 진압하기 위해 급조해 낸 법령으로, 제1조에서 “정치의 변혁을 목적으로

왔던 동양평화와 한국인의 권리 보호 및 한국사회의 안녕유지는 무력과 공포통치를 통해 정리된 한국인압살의 결과적 모습을 가공하여 표현해낸 수사에 불과한 것이었다.

3.1민족독립운동 이후 일제는 동년 8월에 총독을 齋藤實로 교체 한다. 그는 부임이후 새로운 한국지배계략을 施政方針에 대한 훈시와 일반백성에 대한 諭告를 통해 이른바 ‘문화정치’를 표방하면서 一視同仁을 기조로 설정한다. 즉, 한국인과 일본인을 僵合本旨에 기초하여 一視同仁으로 그 지위를 인정하며 문화적제도의 혁신으로 한국인을 이끌어서 그들의 행복과 이익증진을 꾀하며 장차 문화발달과 民力의 忠實에 맞추어 정치적 사회적 대우에 있어서도 内地人인 日本人과 동일하게 취급하게 됨으로써 궁극의 목적을 달성할 것을 밝히고 있다.⁸⁰⁾ 조선인의 康寧을 생각하고 民衆을 愛撫하며 一視同仁을 실현하여 복리를 증진시키며 官制를 개혁하는 등으로 德化를 선포하여 休明의 혜택을 누리도록 新政治를 선포하고 있다.⁸¹⁾ 이러한 문화정치료방을 통해 한국인만을 처벌대상으로 삼아 가혹하게 처벌하던 ‘朝鮮笞刑令’을 1920년 3월에 制令 제5호로 폐지하고 헌병경찰을 일반경찰로 대체한다.⁸²⁾ 또한 中樞院을 활성화하고 지방자치제도를 개정하여 조선인의 정치참여와 의견청취를 제도화하는 변모를 꾀한다.⁸³⁾ 언론에 있어서도 한국어 민간신문의 발행을 허용하게 됨으로써 ‘朝鮮日報’ ‘東亞日報’ ‘時事新聞’ 등의 발행이 이루어지게 되며, 일제는 이들 신

多數共同하여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방해하려 한 자는 10년 이하의懲役 또는 禁錮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金正明編, 朝鮮獨立運動1, 原書房, 1967. 323쪽 이하참조.

80) 매일신보 1919. 9.4. 참조.

81) 朝鮮總督時代資料, 齋藤實文書2, ‘朝鮮總督府官制改革ニ關スル勅語’(大正八年(1919)八月)참조.

82) 이 시기 형사법운용과 그 특징에 대하여는 신동운, 일제하 형사절차에 관한 연구, 한국법사학논총, 박영사, 1991 ; 한인섭, 식민지 형사법제의 구조와 유산, 그 청산의 문제, 광복50주년기념논집1, 한국학술진흥재단, 1995 등 참조 요.

83) 중추원은 자문기관으로 친일배들을 선별하여 보임하고 지방자치제도의 개정을 통하여 일본인과 조선인을 차별하면서 소수의 조선인이 정치에 참여하는 구조를 취한다. 결국 이들 조선인들의 참여는 식민지배가 조선인의 지지와 참여를 통해 실행되는 것임을 대내외적으로 공지하는 한편 식민지배에 조선인의 협력이 공개적이며 합법적으로 이루어짐을 인식시키는 경로가 되었던 것이다. 김동명,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체제의 개편--3.1운동직후 조선에서의 동화주의 지배체제의 확정, 한일관계사연구, 제9집, 1998. 73~124쪽 참조.

문발행이 바로 新施政인 ‘文化政治’의 전형이며 민간이 그렇게 요구하던 언론자유를 통해 상하간 의사소통을 실현해 내는 것으로 自評하고 있다.⁸⁴⁾ 이와 함께 일제는 同化主義 內地延長主義 등의 표현을 동원하면서 한국인에 대한 이전의 강압일변도에서 동화적 회유전략으로 전환하여 다른 측면으로의 차별적 침탈을 도모하게 된다.⁸⁵⁾ 이렇듯 일제는 한국사회의 실상을 분석하여 지배전략을 치밀하게 수정하는 한편 정책적 구호와 명칭을 적절히 조율해 가면서 식민지배에 더욱 몰두한다.

(2) 치안유지법과 사회변화

일제는 1925년에 치안유지법을 법률 제46호로 제정한다. 당시 일본 내에서 격화되는 사상적 분열과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과격행위를 진압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⁸⁶⁾ 한국에서 3.1민족독립운동을 통해 한국인의 자주독립에 대한 의지를 확인한 일제는 보다 다른 방법의 식민지배책략을 구상한다. 아울러 사회변화와 함께 사상적 동향이 매우 다양화하는

-
- 84) 당시까지는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가 유일한 신문이었다. 한국어신문의 발행허가에 대해 ‘매일신보’는 “齋藤實총독부임이래 시대의 추세와 세계적 조류에 鑑하야 종래의 방침을 一改하고 文化政治를 표방하야 舊政의 短 을 捨하고 新政의 長處를 此에 보충하는 등 착착 新施政을 실행함에 당해야 民間怨聲의 焦點의 一이던 言論自由를 어느 정도까지 개방하야 朝鮮文新聞의 간행을 許하야서 施政의 方針을 민간에 徹底케하고 상하의 의사를 소통케 하는”이라는 내용으로 朝鮮文新聞의 발간 허용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매일신보, 1921. 3.9 참조. 이에 따라 1920년 4월에 ‘조선일보’를, 5월에 ‘동아일보’와 ‘시사신문’이 각각 발행된다.
- 85) 그러나 일제가 내 세운 문화정치는 바로 ‘蚊禍政治’에 다름 아닌 것이었다. “우리들 조선인에게 문화정치를 실시한다는 것은 실은 自利自益을 위한 방편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마치 ‘암소를 죽여 고기를 먹는 것보다도 살려두어 그 젖을 마시는 것과 같다. 언론의 자유가 없고 경찰만능이며 조선인을 민주의 황야로 내보는 문화정치, 우리에게 문화는 여름의 蚊禍이상으로 고통을 준다”(조선일보 1924.11.13. 鈴木敬夫, 앞의 책, 194~195쪽).
- 86) 일제는 1차세계대전 이후 일어나는 세계의 진운에 함께하는 본국 내의 사회주의 내지 민주주의 운동 등에 대해 대응방안의 모색이 시급하였다. 조선에서도 국내외적으로 항일운동이 더욱 조직화하는 상황이 전개된다. 일본 내의 사회주의 운동 및 그에 대한 대응과 치안유지법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三宅正太郎, 治安維持法, 現代法學全集 第37卷, 日本評論社, 1931. 499쪽 이하; 이 시기 한국을 중심으로 국내외에서 전개된 항일운동 등에 대한 일본 측 주요자료로는 朝鮮總督府庶務調查部, 朝鮮の獨立事想及運動, 1924 ; 三一獨立運動(全四冊), 原書房, 1983 등 참조 요.

가운데 농민저항과 노동쟁의, 좌경적 사회주의 운동 등이 일제가 행하는 부정의한 식민지배에 끊임없이 저항하게 된다.⁸⁷⁾ 그러자 일제는 이들에 대한 효과적 탄압수단으로 치안유지법을 한국에 시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한국민족이 독립을 요구한 3.1운동으로 인해 일제는 이에 대응하는 특별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으로, 1919년 4월15일에 ‘政治에 關한 犯罪處罰의 件’을 制令 第7號로 공포한다. 이는 1925년에 탄생하는 치안유지법의 선구가 되는 것으로, 정치변혁을 목적으로 다수공동하여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또는 방해하려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제1조)고 하고 자수자에 대해서는 감면규정(제2조)을 두었다. 중요한 내용으로 1919년 4월13일에 상해에서 대한민국 망명정부가 수립되었으며, 생존을 위해 또는 지속적 독립운동을 위한 근거지로 間島 등을 선택하여 떠난 한국동포들이 많이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탄압을 목표로 특별한 내용을 규정한다. 즉, 동령 제3조는 “本令은 帝國밖에서 제1조의 죄를 범한 帝國臣民에게도 이를 적용 한다”라고 하여 당시 해외에서 일어나는 민족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근거법령이 된다.⁸⁸⁾

아울러 일제는 한국을 장악한 채 대륙진출을 위한 기초로 ‘朝鮮徵發令’을 발령하는데 이는 이미 많은 한국인이 間島지방 등으로 거쳐를 옮기는 상황에서 일제의 조선군사령관이 한국 밖에서 무력을 행사하는 不逞鮮人에 대한 진압을 위한 군대 출병을 획책하면서 이루어낸 것이다.⁸⁹⁾ 이것

87) 일제는 3.1운동이후 문화정치를 표방하면서 조선인에 대한 무단적 가혹행위를 바꾸어 朝鮮笞刑令과 같은 비법적인 법을 1920년 3월에 폐지하는 등으로 지배책의 개선을 도모하는 듯하지만, 같은 해에 警察巡閱規則을 제정하고 特別要視察內規를 개정하여 조선인에 대한 尾行과 査察 不審尋問 등을 오히려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최민지 · 김민주, 일제하민족언론사론, 일월서각, 1978. 24~25쪽 참조.

88) 일제가 制令第7號 ‘政治에 關한 犯罪處罰의 件’을 제정하게 된 것은 3.1민족운동 등을 효과적으로 진압하기에는 당시의 保安法이 불비함이 있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특별히 제령의 제정 필요가 컸던 것이다. 그리고 3.1운동을 전후하여 間島滿州 지역 등을 중심으로 한 한국독립 무장봉기에 대한 진압법규로 동령 제3호를 활용하게 된다. 일제는 1919년 10월에 珲春事件捏造를 통해 居留民保護를 명목으로 不逞鮮人을 토벌하는 庚申大討伐을 자행하기도 하였다. 齊藤榮治, 大正8年 制令第7號む論ず, 司法協會雜誌 第2卷 第6號, 1923. 15~16쪽 ;鈴木敬夫, 앞의 책. 190~193쪽 참조.

89) 朝鮮徵發令은 制令 第25號로 大正9年(1920년) 12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역시 상해임시정부의 개설과 그를 거점으로 조국의 독립을 조직화하는 한국인을 겨냥하는 한편, 일제는 이를 형식적 이유로 그동안 준비하여왔던 대륙진출을 본격화하는 계기로 삼는다. 그리고 일본국내의 복잡한 내부사정을 통제하는 한편 식민지배를 공고히 할 법령으로 등장하는 것이 치안유지법이다.⁹⁰⁾

이러한 치안유지법은 1925년 4월 22일에 일본국회에서 법률 제46호로 제정 공포된다. 치안유지법의 핵심은 “國體를 변혁하거나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거나 또는 사정을 알면서 이에가입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제1조)는 규정과, “제1조 제1항을 목적으로 소요 폭행 및 기타 생명 신체 재산상 위해한 범죄를 선동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제4조)는 규정을 통해 명백하게 제시된다. 또한 중요한 내용으로는 “본 법은 누구를 막론하고 본 법 시행구역 밖에서 죄를 범한 자에게도 적용된다”(제7조)라고 하여 식민지배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서 이루어내는 행위에 대해서 까지 처벌을 가능하게 하였다. 총체적으로 치안유지법은 天皇制 수호 및 식민지독립운동과 관련한 범주를 國體로 설정하면서 이를 변혁하려하거나 사유재산제를 부인하는 등의 결사조직 및 그들의 행위를 광범하게 단속하는 강력한 법이 된다. 이러한 치안유지법은 칙령에 의해 1925년 5월 12일부터 한국과 대만에서도 그대로 시행된다.⁹¹⁾ 치안유지법은 그 후 한국인들이 행하는 사상성과 민족성이 내재된 독립운동 및 학생운동, 사회운동

90) 치안유지법의 제정경과에 대한 이해를 위해 당시 사회상황을 알게 하는 법안으로 1922년에 제출된 過激社會運動取締法案을 참고할 수 있다. 이 법의 입법취지를 보면 “근래 일본의 사회주의자가 러시아 공산당과 연락을 취해서 일본에 과격주의를 선전하고 직접 간접으로 러시아 勞農政府로부터 赤化運動費로서 많은 자금을 들여오는 사실이 있다. 더구나 不逞朝鮮人 등이 그사이에 끼어들어 적화운동을 이용해서 조선 독립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그 운동방법이 교묘해서.....이들 사실로 보아 오늘 날의 법규로 이것을 단속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함을 느낀다.”는 내용이다. 奧平康弘解說, 治安維持法, みすず書房, 1973. 5~6쪽. 그러나 이는 입법을 위한 논의과정에서 국 민대중의 비판과 자유주의 법학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법률로 성립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 법리분석은 鈴木敬夫, 法을 통한 朝鮮植民地支配에 관한 研究, 高麗大民族 文化研究所, 1989. 199~205쪽 참조 요.

91) 治安維持法은 1925년 5월8일에 勅令 제175호 ‘治安維持法을 朝鮮, 臺灣 및 사할린에施行하는 件’에 의해 조선과 대만, 사할린에서 大正14년 5월12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을 탄압하는 주요 법률로 역할을 공고히 한다.⁹²⁾

치안유지법은 1928년에 내용을 개정하여 긴급칙령 제129호로 ‘치안유지법중개정긴급칙령’을 공포한다. 일본이 취하는 군국주의적 군사정책에 반대하면서 일본국내에서 발생한 공산주의운동의 격화 및 노동운동 등을 강력하게 진압하고 또한 한국에서는 독립운동에 대한 탄압을 목적으로 同 改正勅令을 공포하여 즉일로 시행한다. 개정치안유지법은 개정안에 대한 의회의 심의 과정에 법리상 논란이 극심하여 폐기되었던 것을 樞密院의 자문을 받아 제국의회의 승인을 받는 특별절차를 통해 긴급칙령으로 부활시키게 된 것이다.⁹³⁾ 제1조에서 “국체의 변혁을 목적으로 하여 결사를 조직하는 자 또는 결사의 임원 기타 지도자적인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며, 사정을 알고 결사에 가입한 자 또는 결사의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사유재산제도의 부인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한 자, 결사에 가입한 자 또는 결사의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고 하였다. 개정 전의 치안유지법에 비해 형량이 무거워 졌으며 지도적 임무 수행자에 대한 구성요건을 첨가하였다. 그리고 결사의 목적수행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새롭게 추가되어 결사의 목적수행에 도움이 되는 모든 행위를 이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대상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행위가담자를 광범위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⁹⁴⁾ 일제는 이러한 ‘치안유지법중개정긴급칙령’을 이듬해 한국에서 발발한 광주학생운동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과 함께 관련 치안법률을 개별사정에 따라 적용함으로써 한국인을 위압하는 강력한 도구로

92) 이에 대해서는 조동걸, 한국근대학생운동조직의 성격변화, 한국근대민족주의운동사연구, 역사학회편, 일조각, 1987. 330~342쪽; 송건호, 한국현대사론, 한국신학연구소출판부, 1984. 90~92쪽 ; 박경식, 앞의 책, 218~225쪽 등 참조.

93) ‘治安維持法中改正緊急勅令’은 1928년 6월29일에 공포하여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경과는 小田中聰樹, 治安政策と法の展開過程, 法律文化社, 1982. 65~68쪽 참조.

94) 奥平康弘, 治安維持法小史, 築摩書房, 1977.100~102쪽. 핵심은 위의 규정과 관련하여 행위자에게 목적의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행위의 양태와 결과가 제1조가 정하고 있는 結社의 목적수행에 도움이 되었다면 치안유지법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서의 법제로 작동시켰다.⁹⁵⁾

또한 일제는 ‘사상범보호관찰법’을 제정하여 1936년부터 시행한다. 동 법 제1조는 “치안유지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言渡가 있는 경우 또는 訴追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公訴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심사회의 결의에 따라 본인을 보호관찰할 수 있다. 본인이 형집행을 마쳤거나 또는 假出獄을 허가받은 경우 또한 동일하다”. 그리고 제2조에서는 “보호관찰에 있어서는 본인을 보호하여 다시 죄를 범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상 및 행동을 관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여 다양한 사상으로 인하여 국체변혁 등의 범죄가능 위험을 안고 있는 자에 대해 광범위한 보호관찰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⁹⁶⁾ 한국에 대해서는 이미 지속되어온 식민지배 및 배일사상 등에 대해 그 저항을 탄압 할 수단으로 制令으로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制令 제16호)을 공포시행하게 된다.⁹⁷⁾ 이로 인해 민족독립과 사회주의사상에 기초하여 배일행위 등을 도모하던 한국인은 언제나 조사 관찰의 대상이 되어 경찰 및 사법 당국의 미행과 연행을 당하게 된다.⁹⁸⁾ 한국민이 숨쉬기조차 어려워지는

95) 광주학생운동(1929.11.3)은 민족적 존엄에 기초하여 일제가 행하는 부당한 노예적 식 민지배를 반대하고 민족적 차별과 멸시를 절대 배격할 것을 요구한 학생중심의 민족독립운동이었다. 광주학생독립운동에서 제시된 주요 요구 및 타도 대상 중 일부를 소개한다. 식민지노예정책과 차별적 교육철폐, 조선사와 조선어교육 요구, 일본인교사에 대한 교육자적 良心을 촉구, 학생에게 자유와 교우회에 자치권을 요구, 조선총독의 폭정을 반대함, 포악한 경찰정치에 항쟁, 식민지 탄압정치 절대반대, 토지는 농민에게 되돌리며 소작료는 3할이내로할 것, 치안유지법 즉시 철폐, 악법을 철폐하고 재감혁명자 즉시 석방을 요구, 교내에 경찰진입 결사반대, 조선인 경찰(赤帽 쓴 자)을 전부죽여라, 일본제국주의 타도, 무산계급혁명 만세, 식민지주의 해방 만세 등을 주장하였다. 당시의 급박한 상황과 일제하의 식민상을 이해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중요의미를 담고 있다. 광주학생독립운동동지회 편, 광주학생독립운동사, 국제문화사, 1974 참조.

96) 보호관찰소는 保護司를 정하여 관찰결과를 보고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보호관찰소 보호사집무규칙’(1936년 司法省訓令 제1호)이 마련되는데, 제2조에서 “國體에 관한 明徵한 관찰과 함께 항상 사회상태의 추이, 人心의 趣向에 유의하여 이에 관한 적정한 인식을 가지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하면서, 대상자에 대한 조사 관찰활동에 대한 상세한 지침들을 규정하고 있다.

97) 일본에서는 1936년에 사상범보호관찰법을 법률 제29호로 제정한다. 한국에 있어서는 ‘朝鮮思想犯保護觀察令’으로 하여 昭和 11년(1936) 12월21일부터 시행한다.

98) 鈴木敬夫, 앞의 책, 261~267쪽.

상황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어서 일제는 전쟁에 승부를 걸면서 본국에서 國家總動員法을 1938년에 법률 제55호로 제정 공포하고 이를 勅令 제316호 ‘국가총동원법을 朝鮮 臺灣 및 檢太에 시행하는 件’으로 공포하여 한국에도 시행한다. 사상의 탄압을 이어서 국가 전체를 전쟁의 소용돌이에 몰아넣는 것이다.

그리고 1941년 3월에는 치안유지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54호)을 공포한다. 앞서 규정한 국체변혁을 목적으로 한 결사에 대해 그를 지원하는 경우(제2조), 결사의 조직을 준비하는 경우(제3조), 결사의 목적을 가지고 집단을 결성하는 자(제4조)에 대한 처벌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이는 항일적 사상과 일제가 추진하는 전쟁에 대해 반대하는 어떠한 결사와 그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행위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차단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법망을 조밀하게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개정이 된다. 이와 함께 형사절차를 간략하게 하고 검사에게 피의자에 대한 강제처분권한을 부여하여 행정적 검속을 가능하게 하였다. 무엇보다도 개정법률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豫防拘禁制’를 제도화한 것이다. 사상적으로 위험성을保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 국가치안에 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조건하에 사회로부터 격리를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대상자는 치안유지법위반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옥하려는 자와 형의 집행종료 및 집행유예를 언도받고 ‘사상범보호관찰법’에 의해 보호관찰 중에 있으면서 아직 미전향한 자가 된다. 예방구금기간은 2년으로 하되 계속 구금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재판소의 결정으로 계속 구금이 가능하게하고 있다.⁹⁹⁾ 그리고 이러한 치안유지법상의 예방구금제에 앞서 일제는 1941년 2월에 제령 제8호로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을 공포 시행한다. 동령 제1조에서 “치안유지법의 죄를 범하여 형으로 처벌받은 자가 그 집행을 끝내고 석방될 경우, 석방 후 동법의 죄를 범할 우려가 현저할 때 재판소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본인에게 예방구금을 명할

99) 이러한 예방구금으로 인해 집행기관으로 보호교도소가 만들어진다. 행위형별로 출발했던 치안유지법은 심정형법으로 발전하였으며 범죄에 대한 사후적 처벌법이 행위 이전과 형벌이후에도 처벌이 가능해지는 것이 됨으로써 법의 탈을 쓴 정치적 처분으로 변질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한인섭, 치안유지법과 식민지통제법령의 전개, 한국법사학논총, 박영사, 1991 참조.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제는 이렇게 그들이 추구하는 한국식민지배 강화를 위해 한국인에 대한 사상적 통제까지를 치밀하게 실행하게 됨으로써, 법을 專斷的 反理性的 인간을 만드는 도구로 활용한다. 일제의 비 이성적 식민지배만행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한국인, 그 한국인이 행하는 이성적사고와 행위에 대해 일제는 前後를 막론하고 봉쇄하고 탄압하면서 침묵적 수용을 강요하였다. 또한 일제의 만행은 이렇게 ‘不法인 法’ 활용을 ‘法治’로 간주하면서 법만능적 사고로 악행을 자행하였으며, 그 결과 일제는 ‘法을 통한 不正義’를 일상화하는 식민지배국이 되었던 것이다.

(3) 민중들의 삶을 억압하는 법과 정책

일제는 문화정치를 내세운 채 관련 법규를 더욱 교묘하게 내용구성하면서 식민지배체제를 강화하려 하였다. 치안유지법을 제정한 다음인 1926년 4월에는 ‘暴力行爲等 處罰에 關한 法律’을 법률 제60호로 제정하였다. 그리고 이 법은 칙령 제299호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조선등에 시행하는 건’으로 명명하여 1926년 9월에 한국에 공포 시행된다. 동 법률 제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빌거나 단체 혹은 다중으로 가장하여 위력을 과시하거나 흥기를 휴대하거나 다수인이 공동하여 형법 제208조 제1항, 제222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¹⁰⁰⁾고 하고 상습범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처벌할 것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제2조에서는 “재산상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또는 얻을 목적으로 前條 제1항의 방법으로 면회를 強請하거나 鬧迫 행위를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百圓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1920년대에 빈발하던 소작료 인하와 소작쟁의를 둘러싼 농민처벌 및 공

100) 여기서 적시하고 있는 형법 제208조 제1항은 폭행을 가한 자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지 않게 한 경우는 2년이하의 징역규정을, 형법 제222조는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하여 해를 끼치려고 한 사람을 협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을, 형법 제261조는 前3條에 기재된 (공문서 사문서 건조물)이외의 물건을 損壞, 상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형벌이다. 그러나 특별법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행위 태양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다수인이 공동’의 형태를 띠게 될 때 특별하게 가중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장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를 광범하게 진압할 근거법규로 작용한다.¹⁰¹⁾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정리된 토지소유관계를 활용하여 농민들과의 관계에서 토지소작제도를 새롭게 구축한다.¹⁰²⁾ 국공유지에 대한 소유관계 정리 및 사적 소유관계를 명백하게 증명하지 못하거나 소유신고 절차를 규정대로 이행하지 못한 개인의 소유지에 대해서 조차 소유권을 획득하는 작업을 통해 대지주로 등장한 동양척식회사는 조선에서 최대 지주가 된다. 이와 함께 일제에 편승한 매국적 앞잡이들이 획득하는 소유토지와 지방의 土豪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획득하는 廣大한 토지 취득은 소수의 지주와 다수의 소작농을 자연스럽게 대립시켜놓았다. 이러한 지주 대 소작농의 관계는 계약이라는 법률행위를 통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지주들의 의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서에 기재됨으로써 법의 효력으로 강제되는 문제를 가져왔다.¹⁰³⁾ 결국 소작쟁의는 구조적으로 강자인 일제와 그 아류들이 유유히 행하는 부당한 수탈행위에 대해 절박하게 생존의 벼랑으로 몰린 피식민국 농민들이 호소하는 억울함의 또 다른 표현이 된다.¹⁰⁴⁾

그 밖에도 소작인들에 대해서는, ‘소작규정’에 의해 법령에 위반하거나 혹은 미풍량속에 위반하여 공안질서를 문란케 할 소작인은 解約하고, 小作爭議團에 加盟하거나 농장에 대하여 부당한 요구나 반항적 운동을 한 경우에는 즉시 농장에서 퇴거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小作規定이 위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함께 치안을 담당하는 법규로

101) 소작분쟁은 매우 심대한 것으로 농민들의 생존기반이 붕괴되는 상황에서 제기되는 문제이다. 이러한 소작쟁의가 1920년대에만 3800여회를, 노동쟁의는 731회가 발생하였다. 조동결, 일제하한국농민운동사, 한길사, 1978 참조.

102) 토지조사사업의 경과와 그 결과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하여는 김용섭, 수탈을 위한 측량, 한국근대민족운동사, 돌베개, 1980; 신용하, 조선토지조사사업연구, 지식산업사, 1981 ; 심희기, 한국법제사강의, 삼영사, 1997. 294~303面 ;이종길, 조선사회법사고, 동아대출판부, 2007등 참조 요.

103) 토지소작계약에 대해서는 박경식, 전개서 591~594쪽 東拓의 正租小作 계약조건과 村井합명회사 진영농장의 소작규정 등 참조 요.

104) 일례로 진도에서 발생한 소작쟁의와 관련하여 당시의 실상을 적고 있는 논설을 참고한다. “東拓과 그 충실한 伴侶인 興業이 상호의존하는 관계에 있는 官權과 공동으로 이 지방의 원주민을 억압 또는 驅逐하려 함은 그들이 주구한 취획품과 함께 그 질서를 차지하려는 예정된 계획이노라. 우리가 대성통곡함을 기다려서 비로소 알 정도로 世人의 신경은 愚鈍치 않노라. 日人소유토지가 4할 을 점하고 매년 8할의 收穫을 가로채가는 실정이라....”. ‘珍島사건에 대하여’, 조선일보, 1924.12. 7. 참조.

역할 하게하였다.¹⁰⁵⁾ 무엇보다도 일본인 지주의 중대에 더하여 일제관리들의 교활한 책동으로 조선인 지주 및 모리배와 소작인간의 분열대립 격화,¹⁰⁶⁾ 그리고 무자비한 일제의 식민수탈정책은 조선인 농민을 반농노, 예농적 임노동자, 채무농민 상태로 몰락시켜 갔으며 이들은 부정의에 대한 최소한의 저항의지도 박멸당한 채 결국 間島등지로 해외유망을 떠나거나 방랑걸식으로 운명을 의탁하는 외에 다른 방도가 없게 되었다.¹⁰⁷⁾

피지배식민지 민족을 말살시키는 책동은 허약한 민중들의 삶의 기반을 광범하게 붕괴시키면서 이용가능 한 일부 부류들을 지원하고 회유하는 방법으로도 작동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법은 이를 상층에서 제압하고 속박하는 강압적기재가 됨으로써 민중들은 기력을 상실당한 가운데 어렵고 높아서 접근이 불가능한, 그리고 그를 이용할 지식과 여타의 어떠한 항변 통로도 갖지 못하는 궁박상황에서 절망하는 존재인 노예가 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재감을 상실당하는 상황으로 추락하게 되는 것이다.

齋藤實이 수행하는 조선지배 기본책략은 일제가 3.1민족독립운동을 진압하면서 구상해 낸 것으로 親日分子育成을 통해 조선지배를 보다 조용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지배하려는 계책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齋藤實은 1920년에 ‘조선민족운동에 대한 대책’을 통해 친일파와 배일파를 구분하여 당근과 채찍으로 한국인을 교활하게 이간시킴으로써 동포 간에 분란·반목을 조장하는 지배전략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¹⁰⁸⁾ ①친일분자를 귀족·양반·유생·부호·실업가·교육가·종교가 등에 침투시켜 그 계급과 사정에 따라 각종 친일단체를 조직하게 할 것 ②종교적 사회운동

105) 金圭昇, 日本の植民地法制の研究, 社會評論社, 1987. 76~78쪽.

106) 조선일보는 '조선인의 정치적 분야'란 제목으로 1925년 1.21자에 다음의 글을 쓰고 있다. “조선에는 자못 전통적인 親日者流가 있다. 즉, 한국말년부터 政路當局하여 일본의 정책을 조성하는 忠實한 傀儡가 되는 소위 賣國奴輩이나 그 외 頭目인 자들이 혹은 零碎한 利權과 虛妄한 榮貴를 꿈꾸면서 즐기어 그의 走狗를 짓던 자못 可憐한 者流들이니, 一進會의 遺孽을 비롯하여 당시 각각 政黨의 명목을 하던幾個의 特種人物들이다”. 이에 앞서 동아일보는 일제 식민지 침탈자들에게 아첨하면서 官民이 野合하며 日鮮同和를 호소하는 무뢰배들에 대해 그러한 파렴치한 행위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글을 싣고 있다. ('官民野合의 漁利運動' 동아일보, 1924. 4.2 참조)

107) 박경식,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지배, 청아신서, 1986. 256~270 참조.

108) 조선총독시대관계자료, 재등실관계문서(742호) 및 박경식, 앞의 책, 208~211쪽 참조.

을 이용하기 위하여 寺刹令을 개정하여 불교 각 종파의 총본산을 ‘京城’에 두고 이의 관장 및 원조기관 회장에 친일분자를 앉히는 한편 기독교에 대해서도 상당한 편의와 원조를 제공할 것 ③친일적인 민간유지들에게 편의와 원조를 제공하고 수재교육의 이름아래 조선청년을 친일분자 인재로 양성할 것 ④친일적 민간 유지 중에서 상당한 학식을 지녔지만 遊食者인 자들을 구제할 것 ⑤조선인 부호 자본가에 대해 日鮮資本家연계를 추진할 것 ⑥민간의 유지에게 편의와 원조를 제공하여 日鮮融和의 修齊會를 조직시켜 이들에게 국유림의 일부를 불하해 주고 입회권을 주어 농촌지도에 노력케 할 것 등의 내용이 된다. 한국인을 분열시키는 책략은 지속적이며 집요하게 편익과 고통을 相馳시키면서 이루어내게 되는 것으로 이는 결국 민족말살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親日輩들의 행로는 식민지배후기에 이를수록 당근의 달콤함으로 정신을 망설당한 채 이성적 마비에 이르면서, 광란적으로 일제천황에 충성하고 한국식민지배를 찬양하는 走狗로 변성되어 갔던 것이다.¹⁰⁹⁾

(4) 교육을 통한 한국민족말살책동

교육에 있어서는 내지와 한국의 구분이 없게 하는 것으로 내지와 한국은 모두 제국의 영토로서 차이가 있어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으므로 궁극적으로는 내지와 동일한 상태에 이르게 할 것을 목적하고 있다.¹¹⁰⁾ 따라서 內鮮共通의 정신을 기초로 內地準據主義를 취함으로써 내지와 동일한 제도아래서 교육이 이루어 질 것을 원칙화 하였다. 따라서 일본어교육을 늘리고 일본역사와 지리교육을 강조하며, 직업교육과 대학교육을 첨가하는 등으로 한국교육에 대한 신교육령인 ‘朝鮮教育令’을 칙령 제19호

109) 朝鮮總督時代關係資料, 斎藤實關係文書, 권2 257쪽 이하. 中樞院議員ニ關スル調書(大正十三年二月一日現在, 在職年數ハ四月二十六日迄ノ計算)를 보면 李完用(官職: 副議長親待, 位: 正三, 勳爵: 一等侯[爵], 學歷: 文學 英語, 略歷: 內閣總理大臣, 新舊黨派: 老論, 資產: 1729380円, 在職年數: 十三年七ヶ月)을 필두로 朴泳孝(顧問 親待, 從三, 一等侯[爵], 기록사항은 위의분류에 따라 모두 적고 있으나 이하 생략함, 이하 동일함), 宋秉畯(顧問 親待, 正四, 一等伯[爵]), 李夏榮((顧問 親待, 正四, 一等子[爵]), 趙民熙(顧問 親待, 正四, 一等子[爵])등으로 자세히 분류 기록하면서 총 67명에 대해 男爵位까지 爵位를 부여하고 있다.

110) 大野謙一, 朝鮮教育問題管見, 94~95쪽.

(1922.12)로 공포한다.¹¹¹⁾ 그러나 이는 一視同仁의 聖旨를 관철시킨다는 명분을 반영한 것으로, 국민으로서의 자질을 육성하고 일본어(국어)를 숙달시키기 위해 일본어 교육을 강화(동령 제6조와 제8조)하면서 한국어교육을 대폭축소하게 된다.¹¹²⁾ 대학교육에 있어서는 동령 제12조의 “전문교육은 전문학교령에, 대학교육 및 그 예비교육은 대학령에 의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이를 정비하여 1924년에 京城帝國大學官制를 공포하여 예과과정을 개설하고 1926년 4월에는 의학부와 법문학부를 개설함으로써 한국에서 일본제국주의 정부에 의한 제국대학교육이 한국인에게 시행 된다.

이러한 경과를 거쳐 이루어낸 일제의 한국식민지배교육은 교육을 통해 한국인의 민족적 주체성과 독자성을 부정하게 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일반적으로 각성된 민족은 역사의 장에서 선조가 조성해낸 궤적을 추적하고 長短을 추출하면서 자기발전의 동력이 될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탐구해 낸다. 이를 통해 현재를 바로세우며 미래를 향한 지향점을 구축하게 된다. 식민지배의 치욕에는 피지배민들이 소중하게 품고 있어야 하는 자율적 역사운용의지와 자기존재의 긍정성에 대해 배척을 강요당하는 부정의의 비극상이 날을 감춘 채 작동되고 있다. 한국 식민지배에 성공한 일제는 한국민족이 발견하고 운용해온 한국의 역사문화와 민족사의 전통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면서, 그를 폐기하고 소멸시켜야 할 내용으로 재구성하는 奸惡的 왜곡행위를 집요하게 추진하였다. 1932년에 발행된 ‘보통학교 국사’의 다음내용은 역사와 진실을 부정의한 무단정치가 관여하여 만들어내는 변괴가 얼마나 공포스러운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우리나라(일제)는 명치초기부터 오로지 조선의 행복을 도모하여 제일 먼저 수호조약을 맺고 조선을 열국사이에 진출시켰다. 그러나 한국은 독립의 실질을 갖추지 못하여 항상 타국의 압박에 움직여 동양의

111) 大野謙一, 朝鮮教育問題管見, 94~130쪽.

112) 3.1민족독립이후 또다시 교육을 통한 민족적 차별과 민족의 존엄성 훼손에 대해 학교별로 동맹휴교와 배일운동이 축적되면서 1926년 6월10일 隆熙皇帝의 國葬日을 기해 민족적 반일운동인 6·10학생만세운동이 발발하게 되었다. 송건호, 한국현대사론, 한국신학연구소출판부, 1984. 90~92쪽.

평화를 깨트리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포츠머드조약에 따라 새로 한국과 협약을 맺고 우리의 보호국으로 삼아 그 외교를 취하였다. 그리고 경성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伊藤博文을 統監에 임명하여 한국의 내정을 개선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그로부터 수년이 지나 한국의 정치는 크게 개선되었으나 다년에 걸친 弊政은 용이하게 제거되지 않아 민심은 아직 불안을 면치 못했다. 그 위에 구미제국의 세력이 활발히 동양에 들어오는 때에 직면하게 되자 함께 國利民福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日韓兩國이 併合하여 하나가 되는 것 이외에는 방도가 없었다.

그런데 朝鮮人 중에서도 열렬히 병합을 희망하여 양국 정부에 청원하는 자가 점점 많아졌다. 한국 황제 역시 이를 생각하게 되면서 민의를 참작하여 明治43年(1910) 8月 통치권을 천황에게 이양할 것을 여쭈어 제국의 新政에 의해 점차 人民의 행복이 증진하기를 바라게 되었다. 천황 또한 병합의 필요를 인정하게 되어 한국 황제의 신청을 받아들여 영구히 한국을 병합시켰다....실로 明治天皇은 아버지가 자식을 생각하듯이 깊은 애정으로 조선인민의 행복을 생각하셨던 것이다. 이때부터 半島의 인민은 모두 제국의 臣民이 되어 황실의 威德을 추앙하게 되었으며 東洋平和의 기초는 점점 다져졌다.”¹¹³⁾

이것이 일제가 조작하는 한일 간의 역사이며 교육을 통해 주입시키려 하였던 한국지배의 정당화 논리였다. 한국인민과 한국황제가 간절하게 한국인민의 행복을 증진시켜달라고 하면서 일제에게 통치권이양을 요청하게 되었고 이를 明治天皇이 수락하여 한국을 영구히 병합하여 동양평화의 기초를 다져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식민지배의 압제와 노예화에 신음하는 한국인민은 끊임없이 자유와 독립을 간구하면서 비겁과 간악의 전형인 일제의 치하에서 벗어나기를 생명을 걸고서 호소하였건만 일제는 이렇게 간악하고도 파렴치하며 반이성적의식으로 교과서의 내용을 구성하여 국민들에게 교육하였던 것이다.

113) 보통학교국사 권2, 109~113쪽. 박경식 앞의 책 216~217쪽에서 재인용.

또한 일제는 ‘皇國臣民誓詞’를 제정(1937.10)하여 자신을 버리고 天皇에게 隨順함이 유일한 삶의 도리이자 모든 힘의 원천임을 體化하게 하였으며, 1938년 3월에는 조선교육령을 개정(제3차)하여 忠良한 皇國臣民을 만들려는 기초를 더욱 단단히 하였다.¹¹⁴⁾ 조선교육령 개정을 통해 조선어과목을 초중등학교에서 隨意科目으로 변경시킴으로써 교장이 재량으로 한국어수업을 교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어수업은 사실상 폐지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여타의 교과에서도 일본의 역사와 문화 자리 등을 가르치게 함으로써 한국역사 및 문화 등에 대한 교육은 추방당하게 되었다.¹¹⁵⁾ 일제는 한국지배를 완전하게 하면서 급박하게 전개되는 중국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38년에 ‘국민정신총동원령’을 내려 친일조직인 국민총력조선연맹을 조직하여 일본어학습을 강화하고 전쟁에 대한 지원이 원활할 수 있게 하였다.¹¹⁶⁾ 일제는 이제 중국과의 전쟁을 넘

114) 당시 총독부 학무국장 鹽原時三郎은 “皇國臣民誓詞는 天皇을 받들며 천황에 絶對隨順하는 道로써, 絶對隨順은 나를 버리고서 오직 천황에 봉사하는 것이 된다. 이 충성의 도를 행하는 것이 우리를 국민의 유일한 삶의 도리이며 모든 힘의 원천이다....”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황국신민서사는 아동용(1)과 중학교이상의 학생 및 일반용(2)으로 구분하여 학교 조회 및 단체의 집회 시, 그리고 국가기념일이나 각종 행사 때 암송 복창하게 하였다. 皇國臣民誓詞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皇國臣民誓詞 (1) 1) 나는 대일본제국의 신민입니다. 2)나는 마음을 합해 천황폐하게 충의를 다하겠습니다. 3)나는 忍苦鍛錬하여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皇國臣民誓詞 (2) 1)우리는 황국신민이며 충성으로써 君國에 보답하자. 2)우리 황국신민은 서로 信愛協力하여 단결을 굳게 하자. 3)우리 황국신민은 忍苦鍛錬의 힘을 길러서 皇道를 宣揚하자. 宮田節子, 皇民化政策の構造, 朝鮮史研究會論文集, 제29집, 1991. 43~45쪽 참조.

115) 김성준, 일제강점하 조선어말살정책연구--조선교육령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2004 (제105집) 참조. 그 후 일제는 1941년3월네 初等學校規定을 공포하여 형식상으로나마 남아있던 국민학교의 ‘朝鮮語’ 교과명을 삭제한다. 그런 다음 1943년 3월에 단행된 제4차 ‘朝鮮教育令’ 개정을 통해 中等學校와 師範學校에서 명맥이 잔존하던 조선어과목도 완전히 삭제하게 된다. 결국 일제가 그렇게 일관되게 추진해오던 한국민족 말살정책은 한국민족이 창달해온 고유언어를 교육영역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목표를 성취하게 됨으로써 간악의 일제로서는 일단 한국민족의 존재실상을 제도적으로 부정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된 것이다.

116) 1938년에는 전국에 일본어강습소를 설치하게 되는데 당시 小學校와 簡易學校의 부설로 설치하여 각종 단체와 공장 상점 등의 직장단위로 일본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다. 이는 한국인이 일본어를 모름으로 인해 일본의 대외 침략전쟁수행에 많은 장애가 있기에 이를 제거하기 위한 총독부의 정책결정에 의한 것이다. 이명화, 조선총독부의 언어동화정책,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995 제9집. 참조

어 1941년 12월에 태평양전쟁을 도발한다. 그리고 1944년 8월부터는 일본어 常用全解運動을 강제하여 일본어만 사용하게 하였다. 한국의 전국민은 일본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우체국 철도 교통운송 등의 관공서는 일본어 사용이 아니면 활용이 불가능하게 하였으며 공공시설 등의 이용 역시 일본어로만 이용이 가능하였다.¹¹⁷⁾ 이것이 바로 일제가 식민지배를 통해 한국에 겨냥한 교육과 언어에 대한 최종 목표점이 된다. 민족언어의 말살은 민족의식의 말살을 수반하는 것이고 당해 민족이 운용해 온 역사 문화에 대한 부정을 동반하는 것이기에 민족말살의 중핵요소가 되는 것이다.¹¹⁸⁾

IV. 1930년대 이후 한국민족말살정책의 가속화와 창씨개명

1. 일제의 대륙침략과 한국식민정책 변화

일제의 동화정책은 1930년대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일제는 1930년대에 들어 대륙침략을 단행하게 되는 것으로 만주침략(1931.9)을 시작으로 중국에 대한 본격진공을 실행한다. 일제는 만주진공을 성공시킨 다음 괴뢰정부인 만주국을 건국하여 청나라의 말대황제인 滕儀를 만주국의 원수로 임명한다. 그리고는 관동군사령관으로 하여금 만주를 사실상 통치함으로써 국제연맹으로부터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고자 하였다. 만주국에 대한 지배는 러시아 세력을 견제하며 중국을 장악하는 굳건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었다.¹¹⁹⁾ 이어서 중일전쟁(1937. 7)으로 중국대륙전체를 전장으로 변화시킨 다음에는 드디어 태평양전쟁을 도발(1941.12)한다. 1900년대 초부터 진행시켜온 일제의 한국침략은 1910년 경술년의 국권침탈을 1차적 목표로 하였으며, 강제병탄을 통한 식민지배이

117) 明石博隆, 昭和特高彈歷史 6, 太平出版社, 1975. 248~252쪽.

118) 南次郎은 內鮮一體의 궁극적 모습이 한국인을 忠良한 皇國臣民으로 만들어 內鮮人 사이에 일체의 구별을 없애는 것이 근본이며 중국적 목적이라고 선전하였다. 南次郎, 道知事會議に於ける總督指示, 1939.5.29. 朝鮮總督府官房文書課編纂, [諭告訓示演述總攬], 朝鮮行政學會, 1941 참조.

119) 만주국의 상황과 당시 한국인의 민족독립운동전개에 대해서는 신주백, 만주지역 한인의 민족운동사(1925~45), 아세아문화사, 1999 참조 요.

후부터는 이처럼 중국대륙과 태평양전체를 전쟁국면으로 변환시키면서 한국을 병참기지로 활용할 준비에 진력하였다. 결국 일제침략자들의 궁극 종점은 중국과 태평양을 전쟁으로 장악하려는 야욕이었으며, 동양평화 등을 내세우면서 행한 20세기 초의 한국지배는 이를 실현하려는 거대 기획의 포석에 불과한 거짓이었음이 확증되는 것이다. 한국을 무단으로 침략하는 행보마다 끊임없이 구호처럼 제창하던 동양평화, 한국민의 복리증진과 안녕질서유지 등은 교활하면서도 간악한 식민침략자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기만용어였음을 명백하게 알게 하는 시점이 바로 1930년대이다.

南次郎은 1936년 8월에 조선총독으로 부임한다.¹²⁰⁾ 일제가 1937년에 중 일전쟁을 일으키면서 조선은 전쟁의 중심으로 들게 된다. 일제는 확대될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동안 한국의 교육 및 사회제도, 치안 법제들을 한국인의 주체적 의식형성을 제압하고 압살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제정과 개정을 거듭하여 왔다. 그럼에도 한국민족은 비겁하게 모의되고 기획된 그들의 부정의에 대해 끊임없이 저항하여 왔다. 일제는 주변국에 대한 침략전쟁을 국가목표로 설정하여 끝없는 전쟁과 침략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자원의 취득 활용 및 저항에 대한 탄압을 法의 이름으로 자행한다. 법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正義蹊蹠행위는 이러한 식민지 수탈자들과 호전적 군국주의자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비인간의 이성 마비적 행태로 이루어진다. 법은 권력을 가진 강자가 내리는 명령이며, 약자인 식민지 민중들은 이에 따를 의무로서의 권리 외에 다름이 없는 것이라는 행태로 식민지 국가를 강압하였다.

일제는 皇國臣民化政策과 内鮮一體 등을 통해 일본천황의 노예적 신민 의식을 주입시키면서 한국인의 민족정신과 민족의식을 철저하게 말살시키는 제도와 정책을 노골적으로 실행한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그들이 기획한 대륙 및 태평양을 향한 대규모 전쟁에 직면하면서 그동안 부분부

120) 南次郎은 1936년 8월 5일 제7대 조선총독으로 임명되어 1942년 5월까지 재직한다. 조선군사령관 일본육군대신 관동군사령관 등을 역임하였으며, 1931년 9.18 만주침략을 주도하는 등으로 군사전략이 뛰어난 군인이었다. 일제가 남차량을 총독으로 지명한 것은 조선을 대륙전쟁의 기지로 설정한 만큼 1937년의 중국침략전쟁과 그 후 이어질 대규모 대동아전쟁의 대륙쪽 책임자로서의 막중하고도 극악적인 책임수행 능력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박경식, 전계서 참조.

분 기만적 이중적으로 위장해온 한국지배에 대해 전면적이며 極惡的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다.

2. 한국민족정신 궤멸(潰滅)을 위한 제 정책

역사왜곡은 역사가 소중하게 담고 있는 진실에 대한 파괴의 시작이 된다. 한 시기의 정치야욕으로 영원하게 지속될 인류역사의 진실을 거짓으로 조작하고 호도하는 惡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한국역사의 반도적 성격론·정체성이론·당파성론 등은 불의와 악의로 가득찬 일제식민 통치 하에서 학문이란 탈을 쓴 교활한 인간군들이 철저한 비굴로 기생하며 구성해낸 궤변의 결정들이다. 총독부는 한국민족의 독자성과 고유성을 부정하기 위해 한국민족과 역사를 왜곡하는 체계적 작업을 수행한다.¹²¹⁾ 총독부는 1916년에 조선반도사편찬위원회를 설치하고 식민주의 사관에 의거한 ‘朝鮮半島史’편찬을 준비하다가 3.1민족운동으로 좌초되었고 1922년에는 이를 이어 ‘朝鮮史’편찬을 준비하면서 朝鮮史編纂委員會를 조직하고 외곽단체로 朝鮮史學會를 발족하였다. 1925년에는 朝鮮史編修會로 개칭하여 편찬작업에 임하였다. 1932년부터 ‘조선사’간행을 시작하여 南次郎총독시기인 1938년에 총37책을 완간하였다. 일제 총독부는 일제가 수행한 한국병탄은 한국에 대한 恩惠임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모으고 있다. 그러다보니 조선시대를 정리하는 사료의 선택 또한 일제의 식민지정책이 합당한 결과임을 논증하는 사료들로만 사용되는 특징도 지적된다.¹²²⁾ 日帝御用學者들이 강조하는 한국민족사의 내용은 한국민족이 보유하는 열악한 민족성으로 인해 事大的이며 黨派的 模倣的일 뿐만 아니라 他律性에 기한 長期間停滯로 인하여 스스로 역사를 운용할 능력이 없음을 강조한다. 결국 한국은 문명국인 일본에 吸收同化됨이 지극히 타당한 것임을 핵심논지로 하고 있다.¹²³⁾ 이렇게 한국민족을 집요하게 부정적으로 수식하

121) 박경식,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지배, 청아출판사, 1986. 402~409쪽 ;신용하, 일제의 한국민족말살 ‘皇國臣民化’정책, 백범과민족운동연구, 2006. 참조.

122) 김용섭, 일본·한국에 있어서의 한국사서술, 역사학보 제31집, 1966 참조 요.

123) 중요요지는 다음과 같다. 한국고대사는 북방민족의 식민지에서 출발하였으며 일본과의 관계는 任那日本府說을 기초로 할 때 20세기 일제의 한국지배는 고대한일관

고 교육하면서 일부의 친일파 지지자들을 확보해 가는 일제의 식민지배 책략은 궁극적으로 ‘한국민족말살’로 귀결하는 것이다. 일제에 의해 한국 민족은 이렇게 철저한 ‘음모적 탐구 및 교육’과 ‘법령’이라는 양 날개를 통하여 민족말살의 궁극을 향해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함께 식민지배 후기에 이르면서 한국어사용을 공식적으로 금압하고 한국어신문을 폐간시키면서 일제가 일으킨 또 하나의 중대사건이 ‘조선어학회’사건이다. 1942년 3월에 조선어학회의 기관지인 ‘한글’을 폐간시킨 다음 조선어를 연구하여온 일단의 학자들을 민족주의자집단으로 규정짓고 이들에 대한 체포 구금으로 민족의식에 기초한 어떠한 단체나 운동도 말살하고자 기획한 사건이다.¹²⁴⁾ 일제는 1931년부터 다년간에 걸쳐 편협한 민족관념을 배양하면서 민족문화의 향상, 민족의식의 양양 등 그 기도한 바가 조선독립을 위한 실력신장에 전력을 다 해왔다는 내용으로 한국어문 연구단체인 조선어학회를 탄압하였다. 결국 1942년 10월1일부터 관련자들을 체포 고문하여 이극로 최현배 이희승 정인승 정태진 김양수 등을 치안유지법위반으로 처벌하게 되는 것이다.¹²⁵⁾

계의 복구가 된다. 또한 한국역사는 남북의 외세에 의해 결정된 타율성의 역사로서 지정학적으로 半島性 및 周邊性에 기인한다. 아울러 타율성으로 인해 문화적으로 독창성이 없는 모방성과 사대성이 지적되며, 한국역사의 장기간에 걸친 정체성으로 인해 민족의 자율적 원동력이 소멸된 만큼 일본의 도움을 기초로 발전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대성과 결합된 당쟁과 정쟁의 黨派性은 끊임없이 분열을 가져오게 되는 것으로 日鮮同祖論 등에 기하여 일본이 한국을 병탄하여 同化함이 합당한 논지로 요약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위해서는 이기백 책임편집, 한국 사시민강좌(창간호), 일조각, 1987. 특집--식민주의사관비판의 각 논문들을 참고바람.

124)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한 경과는 한글학회 편, 한글학회50년사, 1971. 12쪽이하 참조
요. 1945년 1월16일 함흥지방법원은 관련자들에게 징역6년(李克魯)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4년(張鉉植만 무죄)에 이르는 중형을 선고하였다. 조선어학회사건에 대한 다음 판결문은 본회를 조선독립을 위한 실력단체로 규정하면서 민족문화와 민족의 식의 昂揚에 목적을 둔 불온단체로 파악하고 있다. “소화6년 이래로 피고인 이극로를 중심으로 문화운동 가운데 기초적인 語文運動을 취하여 문화운동의 가면아래 조선독립을 위한 실력양성단체로서, 본 견이 검거되기까지 10여년의 장기에 걸쳐 조선민족에 대해 조선어문운동을 전개하여온 것으로..... 다년간에 걸쳐 편협한 민족관념을 배양하였으며 민족문화의 향상, 민족의식의 양양 등 그 기도한 바 조선독립을 위한 실력신장의 수단을 다하지 않은 바가 없었다.....” 조선어학회판결문 참조.

125) 일제의 부당한 판결에 불복하여 이극로(징역6년) 최현배(징역4년) 이희승(징역3년6월) 정인승(징역2년) 등 4명은 항소하였으나 1945년 8월13일에 이를 기각 당하였다. 그런 이틀 후 8.15해방을 맞게 된다.

일제는 또한 한국민족이 갖는 종교적 영역에 대해서도 이를 천황숭배로 대체하는 무모함을 자행한다. 한국인으로서의 민족의식을 부정하며 황국신민으로 개조를 철저하게 추진하는 과정으로 신사참배를 강제하게 되는 것이다. 총독부는 1917년3월 ‘神社에 關한 件’을 제정 공포하여 神社와 神祠를 설치하여 재한 일본인과 한국인들의 참배를 독려하였으며, 1931년의 만주사변이후에는 한국학생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였다. 南次郎이 총독으로 부임한 1936년8월 이후 南次郎은 전국의 읍면단위에 1神社 건립을 강행하였으며, 1937년부터는 학생은 물론이고 기업 단체 등의 신사참배를 의무화한다.¹²⁶⁾ 이는 1938년 중일전쟁 1주년을 기하여 발령한 국민정신총동원령과 결합하게 되는 것으로, 한국인의 신사참배는 여타의 다른 신앙을 폐기하고 오로지 일제천황의 신성에 복종하며 충량한 황국신민으로서 일제 천황을 위해 전쟁체제에 동원되어 모든 것을 온전히 헌신하는 인간으로 개조하는 과정으로 삼았던 것이다.¹²⁷⁾

이러한 진행과 함께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의 한국어신문에 대해서 일제는 内鮮一體를 방해하며 이를 신문발행으로 인해 한국인이 민족의식을 유지하며 언젠가는 한국인의 민족의식에 기한 저항이 시도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통치의 기본적 지도정신은 내선일체의 심화, 즉 조선인의 皇國臣民化에 있지만 그 완성은 본질적으로 지금 조선인이 지니고 있는 민족의식의 底流에 의해 형식적으로는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존재에 의해 저해되고 있다”¹²⁸⁾고 하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한국인의 민족의식 궤멸과 황국신민화를 위해서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의 제거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위의

126) 神社는 일본민족종교인 神道가 숭배하는 神을 제사지내는 건축물이다. 神道는 일본 민족이 天照大神의 자손이며 일본의 天皇은 그 神孫으로서, 결국 천황을 숭배하는 종교이다. 일제치하에서는 1925년에 天照大神과 明治天皇을 祭神으로하는 朝鮮神宮을 경성의 남산에 세웠다. 南次郎의 ‘1邑面 1神社’건립 강행은 1945년 6월 말까지 1141개의 신사를 건립하고 있다. 孫禎睦, 日帝下 夫餘神宮運營과 소위 扶餘神都建設, 韓國學報 제49집, 1987 참조.

127) 신용하, 일제의 한국민족말살 ‘皇國臣民化’ 정책, 앞의 글 및 박경식, 앞의 책, 389~390 참조.

128) 大野文書 1248, ‘諺文新聞統制ノ必要性’ ‘東亞日報廢刊ニ對スル關屋氏ノ質疑要領’, 1939. 崔由利, 日帝末期 植民地支配政策研究, 국학자료원, 1997. 41쪽 참조.

두 신문은 1940년 8월 11일에 자진정간 형식으로 강제 폐간 된다.¹²⁹⁾

일제의 한국민족말살책략은 이렇게 여러 측면에서 다면적이며 입체적으로 한국인을 糊塗하고 强迫한 결과 이 땅에서 한국인의 자주적 민족의식을 소멸시키면서 오직 일본제국주의자들만 우위로 남게 하는 極惡的 식민지배책을 전개하여왔던 것이다.

3. 창씨개명의 단행과 전장동원

(1) 일제가족법제의 이식과 조선민사령 개정

中日戰爭을 준비하고 수행단계에 접어든 일제는 한국민족과 한국인에 대해 虛言으로라도 민족적 주체성과 독자성을 궁정할 이유가 없게 된다. 惡法이지만 법 정비를 통한 침탈을 피하여온 그간의 모든 것이 이러한 일대 침략전쟁을 위한 위장의 과정이었음이 드러나게 되었기에 더 이상 그를 은폐할 수가 없는 궁극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일제는 식민지배 무단통치를 통해 일본국내법을 전면적으로 이식하여 법을 통한 한국 사회의 재편 및 운용을 추진하였지만, 특별하게 가족법영역과 관련하여서는 한국 사회의 관습을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즉, 가족영역이 갖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이질적 외래법률을 강제할 수 없는 것이었기에 가족관계 및 상속관습, 혈연진실성에 기초한 姓本중시의 가족문화를 존중하는 법정책을 취하게 된 것이다.¹³⁰⁾ 하지만 식민지배정책의 연장에서 日帝式 家制度

129) 총독부는 동아일보의 폐간을 위해 동아일보에 대해 경리부정과 과거 독립운동자금 전달 등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압박하였다. 두 신문의 폐간을 이어 1941년에는 한국어 잡지인 文章, 人文評論 등 21종의 한국어사용 잡지도 폐간하게 된다. 최유리, 일제말기 언론정책의 성격--동아 조선일보의 폐간을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 1993(제 20, 21합집) 참조.

130) 일제는 가족법영역에 대한 일본법의 식민지 한국으로의 이식에 대단히 신중한 태도를 취한다. 1912년 3월 12일 공포한 조선민사령을 통해 민사법규 전반에 대해 일본민법이 한국에 依用하게 되지만, 동 민사령 제11조에서 “능력, 친족 및 상속에 관해서는 한국사회의 관습을 따르게 함”으로써 가족법영역에 있어 일본법의 이식은 불가한 것임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친족 상속 등에 관하여 총독부 法務局長·中樞院議長·政務總監·法院長 등이 발하는 回答·通牒은 대단히 중요한 효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과 성격을 구분하여 법적 효력을 다르게 인정하여야 하는 중요성이 있다. 즉, 이들이 발하는

의 이식은 필연적이었으며, 朝鮮民事令의 改正과 朝鮮戶籍令 등의 제정은 바로 이러한 일제식의 家 및 家族關係構築을 위한 계획된 경로의 실행에 불과한 것이었다.

중요한 일례로 戸主制의 이식을 들 수 있다. 일제 明治民法은 家督相續을 규정하면서 중심체로 ‘戶主’를 설정하고 있다. 아울러 호주가 가족구성원에게 행사하는 戸主權의 내용을 강력하게 함으로써 家의 구성원인 家族들이 戸主에게 절대 복종하는 질서체계를 구성한다.¹³¹⁾ 즉, 일제식의 家와 戸主는 호주와 그에 소속된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 ‘家’로 설정하고, 그 ‘家’의 대표자인 戸主를 頂點으로 父子同氏·夫婦同氏의 관계를 설정한다. 그리고 天皇의 조상을 그들 ‘家’의 조상으로 상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본국민모두를 天皇의 臣民으로 구성하는 家族原理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日帝式 家原理와 隨伴되는 법내용을 한국에 교묘하게 그리고 강제적으로 이식시키려 하였던 것이 일제의 가족법 이식정책이었다.¹³²⁾

回答-通牒中 성문법규에 관한 것은 당해 성문법규의 누락에 대한 補充과 解釋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써 有權解釋의 자료에 불과하다. 그러나 친족 상속법 중 관습법이支配하는 사항에 관한回答-通牒·決疑 등은 慣習法을 宣明하는것이므로 그 내용 자체가 바로 법률(관습법)로서 효력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광현, 한국가족법연구, 서울대출판부, 1967. 23~24쪽.

131) 1926년 당시 조선고등법원 판사인 野村調太郎은 조선의 가족관습에 대하여 일본식의 가제도와 호주제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다. 즉, 조선에는 과세표준으로써 戸口관념은 존재하였으나 일본의 家관념은 없으며 호주 또는 호주권의 관념도 없었던 것 같다. 아울러 이는 조선은 일본과는 달리 家督相續의 관념이 존재하지 않음에서 기인한다. 차남이하는 통상 혼인과 함께 別居異財함이 상례이지만 獨子도 역시 이 방법을 취할 수 있었으므로 일본의 분가관념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의 경우 一族이 一家인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일본민법과 같은 家 및 戸主관념이 확립되어 호주상속을 인정하여 ‘本家’·‘分家’라는 용어까지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野村調太郎, 祖上の祭祀と現行の法律, 司法協會雜誌 제5권제4호, 1926.4. 4쪽.

132) 김용옥, 일제에 의한 가족법제의 왜곡과 청산, 한국학술진흥재단, 1995.155~194쪽 참조. 그리고 일제는 한국의 戸主權 내용을 설정하는 과정에 관습조사(관습조사보고서는 1913년에 간행)를 수행하면서 문항설정을 일본민법의 내용과 체제에 따라 ‘戶主와 家族’간의 관계로 설정하여 일제의 戸主權 관점에서 수행한 결과 ‘日帝式 家制度下의 韓國社會 家長權’을 조사하는 근본적 잘못을 행하고 있다. 결국 한국 관습상의 家長權을 일제식의 戸主權으로 교합시켜 관습조사를 한 다음 이를 한국 사회의 戸主權으로 인정하여 중요한 法源으로 작동시키게 되었던 것이다. 이 후 法

결국 한국민족말살의 마지막 단계로써, ‘조선민사령’ 개정을 통해 조선인의 姓名制度를 근원적으로 부정하는 가운데 일제식으로의 개편을 강요 한다.¹³³⁾ 血緣眞實性을 기본으로 부계혈통의 계통적 연결을 지속하는 한국인의 姓과 本貫制度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면서 일제식의 氏制度를 강제하게 됨으로써 한국민족을 말살하는 최후적 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앞서 언어 및 교육을 통해 민족의식과 민족의 주체성 등을 부정할 수 있는 기본된 골간을 구축하여 왔는 터에, 일제는 형식적으로 일본인과 한국인을 똑 같은 체계 속에 편입시키는 절차를 수립하게 된 것이다. 개인과 민족의 정체성을 상징하여 온 한국민 고유의 姓本制度 소멸과 이의 日帝化는 가정영역을 포함하는 전영역에 있어 한국민족의 독자성을 완전히 粉碎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제 한국인은 몰락된 황국신민으로서 일제의 필요도구 즉, 전쟁도구로써 식민법령에 따라 전장에 모든 것을 내어 맡겨야하는 상황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창씨개명을 결과하는 조선민사령의 개정과 한국가족제도의 점진적 일본화에 대해 간략히 정리한다.

1912년 4월1일을 기해 조선민사령이 시행되면서 일본민사법규의 대규모 이식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동령 제11조에서 친족 상속에 관하여서는 일본민사법규를 적용하지 않으며 관습에 의한다는 특칙을 둠으로서 가족법영역은 한국의 관습에 의존하게 되었다.¹³⁴⁾ 그 후 1921년11월14일 제령

務局長回答 政務總監回答 舊慣及制度調查委員會決議, 그리고 朝鮮高等法院判例 등을 통해 한국가족사회의 실체 왜곡이 일관되게 수행된다. 박병호, 일제하의 가족정책과 관습법형성과정, 가족법논집, 진원, 1996 ; 이상우, 일제하 전통가족법의 왜곡, 한국법사학논총(박병호교수 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91 등 참조 요.

133) 1939년 11월10일 制令 第19號 ‘朝鮮民事令中 改正의 件’을 공포하여 創氏改名을 단행한다.

134) 1912년4월1일부터 시행된 조선민사령 제1조는 일본 明治民法을 말하는 것으로, 제1편 總則, 제2편 物權, 제3편 債權은 1896년에, 제4편 親族, 제5편 相續은 1898년에 공포되어 공히 1898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즉, 이러한 일제의 민법을 받아들이게 되는 근거법규가 바로 조선민사령 제1조의 중요내용이 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동령 제11조는 “第1條의 法律中 能力, 親族及相續에 關하는 規定은 朝鮮人에게 此를 適用치 아니함. 朝鮮人에게 關하는 前項의 事項에 對하여는 慣習에 依함”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제시기를 통해 한국가족법상의 관습은 새롭게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되어갔던 것이다. 아울러 가족관습의왜곡 및 관제관습에 대하여 ①총독부주권의 관습조사를 통한 왜곡 ②사법협회의 결의와 회답을 통한 왜곡 ③조선고등법

14호로 조선민사령을 개정하게 되는 것으로, 조선민사령 제11조를 개정(제1차 개정)하여 12월1일부터 시행한다. “조선인의 친족 상속에 관하여는 제1조의 법률에 의하지 않고 관습에 의한다. 단, 親權(日本民法 제877조~제899조 의용) 後見, 保佐(日民 제900조~제943조 의용) 및 親族會中無能力者를 위하여 설치되는 親族會(日民 제949조 및 관련규정 의용)에 관한 규정은 일제민법규정을 依用한다”고 개정하였다. 그리고 ‘能力’(日民 제3조~제20조)에 관하여는 일제민법이 의용 되었으므로 성년남성인 능력자와 未成年者·禁治產者·準禁治產者·妻 등의 무능력자를 명백히 구별하게 되었다.

이어서 1922년 12월7일 제령 제13호로 조선민사령의 제2차 개정이 이루어져서 1923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즉, 日民 제765조 依用으로 婚姻適齡이 남자17세 여자 15세로 규정되면서 적령을 위반한 혼인의 경우 婚姻取消사유가 되며, 裁判上離婚과 認知, 相續의 承認과 財產分離규정이 가족법의 합리화와 상속절차의 보충측면에서 개정 보완된다. 아울러 分家絕家再興 婚姻 協議離婚 入養 協議罷養은 이를 府尹 또는 面長에게 申告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종래의 사실주의에서 신고주의로 전환되는 것과 함께 이를 내용의 호적신고는 신고로 인해 법률적 효력이 비로소 발생되는 창설적신고로 제도화되었다.

家制度와 관련한 중요사항으로, 1923년 7월1일자로 시행된 ‘朝鮮戶籍令’이 있다. 朝鮮戶籍令에 의한 호적제도는 1914년에 개정된 일본호적법을 기반으로 한 것인 만큼 이의 시행으로 한국의 호적제도는 일본호적제도와 동일한 것이 된다. 이에 따라 婚姻 離婚 入養 罷養, 그리고 分家 및 絶家再興 등의 내용 및 방식이 日本內地와 같이 됨으로써 일제식 호적제도의 중심이 되는 ‘家’가 형식면에서 자연스럽게 일본식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또한 호적사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기위해 사법기관인 法院(裁判所)에 호적사무를 귀속시키며, 호적사무에 대한 戶主의 신고의무 강화, 호적업무와 관련하여 절차적 험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으로

원 판례를 통한 관습왜곡 등이 통합적으로 관습의 官製化로 수렴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이에 대하여는 이상욱, 앞의 글 참조 요.

日帝式 家制度와 戶主制度를 한국에 정착시키게 된다.¹³⁵⁾ 이러한 전단계는 후일 創氏改名을 통한 핵심요소의 변개를 향한 관련영역의 정비였으며 나아가서 이를 수용할 복선을 제시하는 과정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¹³⁶⁾

(2) 창씨개명의 단행

결국 창씨개명을 주도하는 법령으로는 ‘朝鮮民事令中 改正의 件’(制令 제19호. 1939년 11월10일 공포, 1940년 2월11일 시행), ‘氏選定 및 氏名變更制限에 관한 件’(制令 제20호. 1939년 11월10일 공포, 1940년 2월11일 시행), ‘朝鮮戶籍令 중 改正의 件’(府令 제220호. 1939년 12월26일 공포, 1940년2월11일 시행)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일제는 1939년 11월10일 制令 第19號 ‘朝鮮民事令중 改正의 件’을 공포하여 創氏改名을 단행한다. 시행기일은 日本皇紀 2600년의 紀元節인 昭和 15年(1940) 2월11일이다. 개정된 조선민사령 제11조는 “조선인의 친족 및 상속에 관하여는 별단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하고는 제1조의 법률에 의하지 않고 관습에 의한다. 但 氏 · 婚姻年齡 · 裁判上離婚 · 認知 · 裁判上離緣 · 婚養子緣組의 경우에 婚姻 또는 緣組가 無效 또는 取消된 때의 緣組 또는 혼인의 取消 · 親權 · 後見 · 保佐人 · 親族會 · 相續의 承認 및 財產의 分離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氏는 戶主(法定代理人이 있는 때에는 法定代理人)가 이를 정한다”라고 하여 창씨개명을 중심으로 한 家制度에 대한 정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氏에 관하여 호주 및 가족은

135) 이에 대하여는 박병호, 일제하의 가족정책과 관습법형성과정, 가족법논집, 진원, 1996 참조.

136) 일제는 한국가족관습에 대한 官製變形을 통해 한국사회의 가족제도에 대한 역사적 실체를 왜곡하는 작업을 가속화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를 일제와 일체화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일례로 1933년 3월3일 조선고등법원판결은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제도가 확립된 오늘날에 이를 배척하고 있는 祭祀相續의 관념은 先代奉祀와 祖上祭祀를 주로하는 道義上의 地位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하여 제사상속을 법적으로 폐기하는 판례를 확립하였다. 祭祀相續은 조선사회유지의 근간을 이루어오던 것으로, 조상숭배, 동성동본금혼, 異姓不養, 姓不變, 昭穆之序 族譜刊行 등의 제원칙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단순히 도의상의 지위로 규정함으로써 그로부터 연원하는 제 제도들에 대한 변화가 이미 예고되고 있었던 것이다. 박병호, 위의 책 및 김용욱, 일제에 의한 가족법제의 왜곡과 청산, 한국학술진흥재단, 1995.155~194쪽 참조.

그 家의 氏를 칭하는 규정(민법 제746조),¹³⁷⁾ 裁判上離緣(罷養)에 관한 규정, 婚養子緣組의 무효내지 취소에 관한 규정을 依用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함께 조선민사령 제11조의2로 “조선인의 養子緣組에 있어서 양자는 양친과 同姓임을 요하지 않는다. 단 사후양자인 경우에는 此限에 不在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가 종래 지켜온 異姓不養의 원칙이 무너지고 婚養子制度가 가능하게 되면서 婚養子緣組의 무효취소 규정이 依用되는 법규보완이 이루어지게 된다. 일제식 氏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家名으로 호칭되는 氏名 사용을 가제도의 중심으로 위치시키게 되면서 관련되는 이성양자 서양자제도 등이 같이 한국가족제도로 이입되게 된다. 일제의 한국가족질서 및 가족법파괴와 일본법제의 침투는 이렇게 시간을 가지면서 치밀하고도 철저하게 이행되어왔다.

創氏改名에서 氏에 대한 이해를 위해 鄭光鉉교수의 다음 글을 참고한다. “‘姓’은 ‘男系의 血統을 표시하는 稱號’를 의미하며, ‘氏’는 ‘家를 表彰하기 爲한 法律上名稱’을 의미한다. 그리고 일본인의 개인칭호를 구성하고 있는 中村, 伊藤의 漢字는 자기의 所屬된 家籍을 표시하는 ‘氏’의 성질을 가진 것이다. 그러므로 동일한 家籍에 있는 자는 동일한 ‘氏’를 호칭하고 있다.”¹³⁸⁾ 따라서 이러한 창씨개명은 한국인의 姓과 本貫이 갖는 의미를 폐기시키는 것으로써, 南次郎 총독은 內地式 創氏改名에 대해 “同祖同根하는 皇國臣民으로서 국민의식을 확연히 하면서 內鮮一體를 鞏固히 하는 방안”임을 극력 강조하였다.¹³⁹⁾ 조선민사령은 부칙에서는 “조선인 호주(법정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법정대리인)는 本令施行後 6월 이내로 새로 氏를 정하여 이를 府尹 또는 邑面長에게 제출함을 요한다. 전항에 의한 屆出을 하지 않을 때에는 本令施行當時의 戶主의 姓을 氏로 정한다. 단 일가를 창립한 女戶主인 경우 또는 戶主相續人이 분명치 않은 때에는 前男戶主의 姓을 氏로 한다”라고 하여 창씨개명이 완벽하게 종결될 수

137) 創氏改名의 기본이 되는 일본민법 제746조는 “호주 및 가족은 그 家의 氏를 칭한다”. 따라서 가족구성원 모두는 공통된 氏名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한국고유의 부계 혈통적 성과 본관제도를 배격하게 되는 것이다. 부계혈통을 잇는 성불변의 원칙, 이성불양원칙, 서양자불허원칙 등이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138) 정광현, 한국가족법연구, 서울대출판부, 1968. 26쪽.

139) 南總督 談話, 司法上に於ける內鮮一體の具現--內地人式氏の設定に就て 참조.

있게 하였다.¹⁴⁰⁾ 즉, 1940년 8월 10일까지 창씨개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당시 戸主의 姓을 일본식 氏名이 되는 것으로 함으로써 호주를 중심으로 한 家名이 통일적으로 적용되게 하였다. 결국 ‘法定創氏’제도를 통해 모든 한국인들이 창씨개명을 하게 된 결과, 1940년 8월 10일은 법적으로 가공할 民族抹殺의 시점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 밖에도 ‘氏選定 및 氏名變更制限에 관한 件’(制令 제20호. 1939년 11월 10일 공포, 1940년 2월 11일 시행)을 통해歴代의 御諱 또는 御名의 사용을 제한하며自己의 姓 이외의 성은 이를 氏로 할 수 없게 하고 있다. 또한 ‘朝鮮戶籍令 중 改正의 件’(府令 제220호. 1939년 12월 26일 공포, 1940년 2월 11일 시행)은 창씨개명으로 한국인과 일본인의 구분이 불가하며 한국인간에도 혈족의 구분이 곤란하게 됨으로 인해 혼인을 비롯한 가족질서상의 혼란우려가 존재하는 점을 시정하기 위해 ‘朝鮮戶籍令’을 개정하여 姓을 本貫과 함께 기록함으로써 혼란을 방지하는 기술적 보완을 하게 된다.

(3) 창씨개명과 전장동원

창씨개명은 인구 개개인의 姓本에 대한 변화를 직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선 선조를 능멸하고 자신의 역사적 존재성을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만큼 이에 대한 개인적 민족적 저항은 일제가 충분히

140) 창씨를 열렬히 희망했던 사람 중의 일인으로 지목될 수 있는 李光洙의 창씨개명에 대한 찬양자료 내용을 소개한다. “作名의 辭---香山光郎.(가야마 미쓰로)로 고치고 2600년전 신무천황께서 즉위하신 곳이 軀原인데 이곳에 있는 산이 香久山입니다. 뜻깊은 이 산이름을 씨로 삼아 ‘향산’이라 한 것인데 그 밑에다 光洙 의 光 자를 붙이고 洄 자는 內地式 의 郎 으로 고쳐서 香山光郎.(가야마 미쓰로)라고 한 것입니다.”(選氏苦心談, 每日新報1940.1.5). “나는 깊이 깊이 나의 자손과 조선민족의 장래를 생각한 끝에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굳은 신념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나는 천황의 臣民이다. 나의 자손도 천황의 신민으로서 살 것이다. ...”(創氏와 나, 每日新報1940.2.20). 그리고 이광수는 內鮮一體에 대해서도 다음의 주장을 펴고 있다. ‘心的 新體制와 朝鮮文化의 進路’ (每日新報, 1940.9.7)에서 그는“일반적으로 조선인이 내지인에 비해서 충성과 문화의 수준이 낮은즉 내지인의 우월감은 자연스런 일 아니 이에 대하여 조선인은 항상 일보 매진하여 일단 더 敬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좋다고 믿는다. 내지인은 그 조상적부터 많은 피를 흘려 皇運에 扶翼하여 오지 않았는가.....” 정창석, ‘내선일체’논리의 양상, 일본학보, 제42집, 1999.6. 371-392쪽.

파악하고도 남음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 연유로 이를 강제할 최후 시점포착을 고심하면서 대신 우회적으로 관련하는 여타 제도를 위압과 교활을 섞은 교묘한 계책으로 선행정비해오는 과정을 밟아왔던 것이다. 南次郎은 황국신민화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을 조직한다. 황국신민으로서의 조직을 더욱 강화하면서 内鮮一體를 실천하는 일에 주력한다. 총독부 행정조직을 따라 중앙과 지방의 연맹조직을 강화하고 최하층에는 10호단위로 ‘愛國班’을 편성하여 한국인을 완전한 동원체제로 일원화시키는 것이었다.¹⁴¹⁾ 그런 다음 창씨개명을 통해 한국민족의 근원성을 부정하고 배격하게 한 다음 형식적으로 일제와 일체가 된 것으로 기만시킨 다음, 일제에 내선일체로부터 유래하는 충성을 강요하기에 이른다.¹⁴²⁾ 일제와 총독부는 국가운영을 전시상황으로 몰아가면서 식민지 한국에 대해 모든 것을 신민의 자격으로 혼신할 것을 요구한다. 결국 창씨개명이후에 조성되는 법령은 전시체제하에서 전쟁수행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 이루어내는 전쟁동원법령에 불과하다. 한국민족을 일본민족과 동일시한다는 거짓선언아래 전장의 무기로 전쟁수행을 위한 후방지원인력으로 이끌어내는 절차와 내용을 구차하게 마련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결국 창씨개명을 하고난 다음 일제는 조선인을 戰場으로 이끌고 갔던 것이다.¹⁴³⁾

141) <總動員> 창간호,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강령 실천요목 규약 조직대강, 1939.6. 38~45쪽 참조.

142)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은 <총동원>이라는 기관지를 발간하고 그 후에 <새벽>을 간행하여 약 50만부를 발행한다.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최하 조직인 애국반 조직이 당시 약 40만개 정도였으며, 이들 애국반의 반장급에게 <새벽>등의 잡지에 게재한 창씨개명과 관련한 홍보내용을 배포하여 읽게 하였던 것이다. 정운현 편, 전계서.164~165쪽.

143) 창씨개명은 1942년5월 각의에서 결정된 조선징병제 시행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1945년 3월6일자 내무성 기밀문서의 내용 중 “.....대다수는 희망대로 창씨하고 황국신민이 된 결의를 서서히 굳혀 현재에 있어서는 内鮮融合一體 위에 좋은 결과를 계속 낳고 있다고 믿음. 특히 징병제도를 실시한 오늘날 皇軍으로서 조금의 차별도 없이 혼연일체가 되어 군무에 계속 정진할 수 있고, 만일 현재 군대 안에 김모 이모 등이 섞여있다고 생각하면 그 이득과 폐단 또한 저절로 밝혀지게 되고.....[(秘) 조선 및 대만 거주민 정치처우에 관한 질의응답] 내무성관리국 1945.3.6.”라고 하여 전쟁수행을 위해서도 반드시 창씨개명은 필요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정운현 편역, 創氏改名, 학민사, 1994. 39~40쪽.

결국 일본제국주의자들의 狂奔적 침략질주는 확장하는 戰場一線으로 활용 가능한 한국민족을 최대한 몰아넣는 만행을 자행한다. 이러한 危急·終末的局面에서 일제는 한국민족의 독자성과 정체성을 절대 존중하지 않고자 하였던 침탈본성을 여과없이 실행한다. 일제는 오랫동안 한국 민족말살 底意를 능란한 欺瞞習癖으로 용하게 숨겨왔지만, 궁극에 이르러 극악적 자기모습을 표출할 수밖에 없는 시간적 운명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다.¹⁴⁴⁾

비겁하고 교활하며 호전적이며 이간책동에 능한 간악한 일제의 한국식 민지배는 이렇게 巨惡으로서의 日帝自身을 추악하게 自認하는 과정이었으며, 그들이 한국침략초기에 강조하였던 ‘동양평화’는 ‘동양전쟁’이며 ‘동양능멸’이었음을 전 인류에게 폭로하는 것으로 비인간적 행태의 전형을 여지없이 제시한 것으로 결론된다.

이러한 창씨개명은 조국이 광복된 다음 해인 1946년 10월23일 미군정 청 법령 제122호 ‘朝鮮姓名復舊令’의 “일본통치기의 법령에 기인한 창씨 제도에 의해 조선성명을 日本式氏名으로 변경한 호적 기재는 그 創初日로부터 무효임을 선언 한다”는 내용에 따라 본래의 모습을 복구하게 되었다.

V. 결 어

역사가 담고 있는 진실을 구명하기 위해 역사에 대한 관점설정과 탐구 고민은 대단히 중요하다. 진실을 찾기 위해 제기되는 역사연구방법 중 ‘실증주의’와 그의 극복을 위해 제기된 역사가의 능동성을 강조하는 ‘현재주의’는 모두 유용성을 갖는다. 따라서 연구자 개인이 진실에 대한 집념어린 자각과 그에 대한 굳은 의지를 사료탐구를 통해 실천으로 연결해 낼 때만이 진실에의 접근이 가능하게 된다.¹⁴⁵⁾ 특히 본고는 법을 중요 축으로 삼으면서 일제의 식민지배과정 전반을 검토하였다. 일제는 한국지배

144) 1940년 이후의 치안유지관련법제 및 전시형사법령의 정비, 그리고 국가총동원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鈴木敬夫, 앞의 책, 288쪽 이하를 참조바람.

145) ADAMSCHAFF, History and Truth, Pergamon Press, 1976(England). 金澤賢譯, 歷史와 真實, 青史, 1982. 참조 요.

를 위해 어떠한 정치적 목적에 기초하여 구체적 법과 정책을 전개하고 있는지를 추적하게 된 것이다. 국가가 설정하는 근본 되는 정책 및 정치적 목적은 이후 전개하는 역사에 대한 方向舵로서의 역할은 물론이고 근본된 동력으로서 작용한다. 일제가 전력을 다해 추진한 한국 식민지배와 민족말살정책은 식민지배초기행태 및 정책근본에 대한 이해로부터 접근되어져야 한다.

일본제국주의자, 그들은 왜 한국을 온갖 교활술책으로 기만하고 강압하면서 병탄을 기도하였으며 궁극에는 한국민족의 존재근본을 부정하며 말살하는 책동을 실천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근원적 이해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들은 국가가 처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힘을 축적하면 할수록 대륙과의 연계를 도모한다. 대륙과의 연계는 심리적 안정감과 함께 대외 관계에서 무한한 교류가능성을 담게 된다. 한국을 始點으로 삼아 행하는 대륙연결은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교류를 안정감 있게 확장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그래서 일제가 행하는 한국에 대한 침략과 식민지배는 어떤 美辭麗句로도 감출 수 없는 일제의 불변하는 정치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국가적 힘이 상대적으로 쇠약함을 보일 때 일제는 최적의 한국진공시점으로 포착하였음을 기억하여야 한다.

일제의 법제는 한국민족을 억압하고 말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어떠한 정책이나 법도 한국인을 존엄하게하거나 한국 땅에 정의에 기초한 평화를 제공하려는 생각은 티끌만큼도 존재하지 않는 특징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폭압적 행위를 자행하면서도 법을 통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가득하였으며, 이러한 법 활용이 야만을 벗어난 근대라는 시대적 조류에 합치하는 것으로 가장한다.¹⁴⁶⁾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자 그들은 한국민족을 법을 받침대로해서 위압하고 유린하여야 할 대상으로 확고하게 설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법을 통한 자유 평등 진리에 대한 모색과 정의의 실현은 한국에 대해서만은 근원적으로 실종되어있었다.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일제의 한국침략 의도는 한국을 강제병탄하고 식민지배하면서 최후에는 대륙으로의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하는 것

146) 남홍우, 일제의 한국침략에 있어서의 법규범과 그 적용에 관한 문제, 아세아연구 제33호, 1969. 49~50쪽 참조.

이었다. 그를 은폐하면서 추진하는 과정에 ‘不法인 法’을 제정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법을 통한 국가운영이라는 근대 문명국가적 요소를 한국인에게 기만적으로 덧씌우면서 순응을 강요하였다. 일제는 한국에 대한 식민지배와 국권침탈이라는 巨惡을 교활하게 숨기면서 不正義로 가득 찬 법제를 차곡차곡 이식하면서 거짓된 法治를 강제하는 식민지배기조를 확고히 하였다. 결국 간악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庚戌年에 한국의 국권을 강제 침탈한다. 그런 다음 威嚇的 武斷政策으로 한국민족과 한국사회를 유린한다. 한국의 민족독립운동인 3.1운동의 저항을 맞으면서 무단정책에 한계를 느낀 나머지 이를 변경하여 文化政治로 회유하는 교활함을 발휘 한다. 그러나 교활한 일제가 내 세운 문화정치는 바로 ‘蚊禍政治’에 다름 아닌 것이었다. 우리들 한국인에게 문화정치를 실시한다는 것은 실상은 더 큰 自利自益을 위하여 우회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마치 “암소를 죽여 고기를 먹는 것보다도 살려두어 그 젖을 마시는 것과 같다. 언론의 자유가 없고 경찰만능이며 조선인을 만주의 황야로 내보는 文化政治, 우리에게 文化는 여름의 ‘蚊禍’(모기떼의 災禍)이상으로 괴로움을 준다는 문화정치를 기억하여야 한다.”¹⁴⁷⁾는 것이었다. 결국 문화정치를 標榜하였지만 한국지배의 근본목적과 한국민족 멸시관념이 너무나 분명한 가운데 이를 가장하느라 오히려 교활한 책동과 美辭麗句에 복잡성을 더할 뿐이었다.

그러나 일제는 그것마저 얼마 지나지 않아 인내에 한계를 자인하면서 직접적 탄압책을 동원한다. 한편으로는 학문을 빌어 한국역사와 민족성에 대해 부정적 측면을 파헤치는 연구를 집중한다. 학문과 교육의 이름으로 진리와는 전혀 무관한 연구를 독려하면서 한국인이 스스로를 부정하는 의식을 갖도록 맹렬히 교육한다. 군국주의적 식민지배 정치야욕을 학문으로 수식하면서 한국민족과 한국역사를 타율성에 기한 독립불능의 대상으로 몰아간다. 日帝, 그들은 한국정복을 통해 대륙을 진출하여야한다는 침략적 사고를 현실화하기 위해 정책을 구상하고 교육을 기획하며 選民的 意識으로 여타국과 교류하는 역사 속 기조를 절대 방기하지 않을 것이다.

147) 조선일보 1924.11.13. 참조.

결국 193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부터는 그동안 가려오던 위장막을 점차 걷어 내면서 한국민족의 존재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創氏改名관련 법제를 발효시킨다. 한국인들이 마지막 까지 지켜오던 가족제도와 姓本制度마저 일제의 氏制度로 바꾸면서 한국민족의 존재근본을 법제상 궤멸시켜 없앤다. 一視同仁·內鮮一體·同祖同根·皇國臣民 등의 修辭를 사용하면서 한국인을 일제 그들과 일체인 것처럼 강조하였지만 궁극적으로는 한국민족의 독자성과 자주성을 말살하고 노예로 변성시켜 이들의 戰場으로 동원하는 최후적 수단을 자행한다. 한국민족은 추호도 원치 않는 이런 구호들에서 조차도 일제는 진실을 원천적으로 존재시키지 않고 있다. 일제가 말하는 ‘內鮮一體’는 방법적으로 ‘國體의 明徵’을 조건으로 한 皇國臣民化이며, 이는 일제가 우월감을 기초로 한국민족에게 베풀어주는 施惠라는 本心(‘本音’)을 秘藏하는 가운데 설정하는 구호인 것으로 진실은 内鮮一體를 거부하면서 행하는 奸計적 표현일 뿐인 것이다. 즉, ‘국체의 명징’이라는 도덕적 난관을 설정하여 한국인에게 끝없이 ‘皇國臣民이 되기 위한 練成’을 강요함으로써 한국인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근거를 숨겨 가지고 있는 것이다.¹⁴⁸⁾ 이와 함께 ‘內鮮一體’는 엄밀히 보면 한국인이 완전히 일본인이 되어 한국인은 소멸하게 된다는 의미의 가공할 함정도 존재한다. 이렇듯 일제는 일관되고도 철저하게 교활하며 간악한 계책으로 한국민족을 말살하려 하였던 것이다. 법을 형식논리적으로만 인식하는 침략제국주의자들에게 있어 약소한 존재는 언제나 침탈의 대상이요 멸시와 기만의 대상일 뿐이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정의’는 근원적으로 法 속에 존재하여야 할 내용이자 요소가 아닌 것으로, 그래서 正義와 法은 어떠한 관계도 없는 것이 되고 있었다. 法을 약소하고도 얇아 부족한 隣國을 침탈하는 도구로 쓰면서 法治이자 合法임을 강변하면서 스스로를 기만·왜곡하는 교활한 習癖을 體化한 그들이 바로 일본제국주의자들이었다.

법 정신을 유린하면서 법을 통해 한국을 식민지배 하였던 부정의의 전

148) 皇國臣民化와 관련하여 ‘國體明徵’은 천황을 現人神으로하고 군신일체 충효일본의 國體, 만세일계의 皇統을 절대부동으로하는 국체관념을 전국민에게 확고부동하게 배양하여야 하는 것 등으로 국체명징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박경식, 앞의 책, 390~402쪽; 정창석, ‘내선일체’논리의 양상, 일본학보, 제42집, 1999.6. 371-392쪽.

형인 일제식민주의자들. 그들은 한국인에게 ‘法은 正義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게 하였으며, ‘法은 오로지 약소한 국민을 속박하고 통제하는 수단’이라는 誤謬적 법지식을 無斷하게 남겨놓았다. 그 결과 한국사회는 현재도 不法과 正法을 법전문인들이 편익에 따라 來往시키고 있는 것으로, 自責하는 기운마저 거부하거나 窮乏에 싸여있다. 현재 한국사회의 많은 법전문가 또는 공직자가 부정의에 익숙하거나 정의를 냉소하는 법의식 및 法觀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不正義한 식민지배역사에 대한 냉철한 성찰부재, 그리고 정의에 대한 각성노력과 실천의지의 결여에서 기인한다.

한국사회는 부정의의 역사에 대한 단호한 극복을 기초로 정의로운 인간 및 사회의 설정과 실천을 교육 및 법정책의 핵심기조로 확립하여야 한다. 더하여 현시대 한국인들에게 요구되는 긴급과제가 있다. 일제에 의해 강제된 한국식민지배역사가 담고 있는 不正義에 대한 구체적 법제 및 정책의 실체를 탐구하고, 그를 교훈으로 현재 한국사회를 ‘正義로 축조한 法’을 설정하여 그에 의한 ‘法治’를 구현해 내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不正義 구축에 노력하면서 정의를 유린한, 그리고 유린하는 인물들에 대한 연구와 공개 역시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이것이 한국민족말살을 기도한 일제의 주요법제 탐구를 통한 각성이자 결이이다.

주제어 : 일본제국주의, 식민정책, 한국민족말살, 강제병탄, 조선민사령, 부정의, 법의 지배

참 고 문 헌

〈단행본〉

- 姜在彦, 朝鮮の開化思想, 岩波書店, 1980.
- 姜在彦, 朝鮮問題における内田良平の思想と行動, 歴史學研究, 1966.
- 광주학생독립운동동지회 편, 광주학생독립운동사, 국제문화사, 1974.
- 국회도서관간, 한말근대법령자료집.
- 金圭昇, 日本の植民地法制の研究, 社會評論社, 1987.
- 김용섭, 수탈을 위한 측량, 한국근대민족운동사, 돌베개, 1980.
- 金正明編, 朝鮮獨立運動1, 原書房, 1967.
- 김준철, 일제하의 한국민족자본과 민족사학에 관한 연구, 상조사, 1984.
- 鈴木敬夫, 法을 통한 朝鮮植民地支配에 관한 研究, 高麗大民族文化研究所, 1989.
- 農商工部水產局 編, 韓國水產誌.
- 大野謙一, 朝鮮教育問題管見, 朝鮮教育會, 1936.
- 大野文書, ‘諺文新聞統制ノ必要性’, 1248.
- 明石博隆, 昭和特高彈壓史 6, 太平出版社, 1975.
- 박경식,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지배, 청아출판사, 1986.
- 박병호, 일제하의 가족정책과 관습법형성과정, 가족법논집, 진원, 1996.
- 三一獨立運動(全四冊), 原書房, 1983.
- 三宅正太郎, 治安維持法, 現代法學全集 第37卷, 日本評論社, 1931.
- 釋尾東邦, 朝鮮併合史.
- 小森德治, 明石元二郎(上), 臺灣日日新報社, 1928.
- 小田中聰樹, 治安政策と法の展開過程, 法律文化社, 1982.
- 손인수, 한국개화교육연구, 일지사, 1985.
- 송건호, 한국현대사론, 한국신학연구소출판부, 1984.
- 신용하, 조선토지조사사업연구, 지식산업사, 1981.
- _____, 한국민족의 형성과 민족사회학, 지식산업사, 2001.
- 신주백, 만주지역 한인의 민족운동사(1925~45), 아세아문화사, 1999.

- 심희기, 한국법제사강의, 삼영사, 1997.
- 奥平康弘, 治安維持法小史, 築摩書房, 1977.
- 奥平康弘解說, 治安維持法, みすず書房, 1973.
- 유영익, 갑오경장연구, 일조각, 1990.
- 이기백 책임편집, 한국사시민강좌 (창간호), 일조각, 1987.
- 이상욱, 일제하 전통가족법의 왜곡, 한국법사학논총(박병호교수화갑기념
논문집), 박영사, 1991.
- 이종길, 조선사회법사고, 동아대출판부, 2007.
- 이태진 · 사사가와 노리가츠(笠川紀勝) 공편, 한국병합과 현대--역사적 국
제법적 재검토, 태학사, 2009.
- _____ 외, 한국병합의 불법성연구, 서울대 출판부, 2003.
- 정광현, 한국가족법연구, 서울대출판부, 1967.
- 정궁식 역, 국역관습조사보고서, 한국법제연구원, 1992.
- 정운현 편역, 創氏改名, 학민사, 1994.
- 조동걸, 일제하한국농민운동사, 한길사, 1978.
- 朝鮮總督府刊, <韓國ノ保護及併合>, 1917.
- 朝鮮總督府官制, 朝鮮法令輯覽(上).
- 朝鮮總督府庶務調查部, 朝鮮の獨立事想及運動, 1924.
- 朝鮮總督府學務局編, 朝鮮教育要覽.
- 朝鮮總督時代關係資料, 斋藤實關係文書, 권2.
- 朝鮮總督時代資料, 斎藤實文書2, ‘朝鮮總督府官制改革ニ關スル勅語’(大正
八年(1919) 八月).
- 中野正剛, 我か觀たる満鮮, 政教社, 1915.
- <總動員>創刊號,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강령 실천요목 규약 조직대강,
1939.6.
- 최민지 · 김민주, 일제하민족언론사론, 일월서각, 1978.
- 최유리, 일제말기 식민지지배정책연구, 국학자료원, 1997.
- 統監府法令資料集(上)(下), 1972.
- 南總督談話, 司法上に於ける内鮮一體の具現--内地人式氏の設定に就て.

韓國警察事務委託ニ關スル覺書.

韓國併合에 관한 件 臨 對韓施設大綱.

한글학회 편, 한글학회50년사, 1971.

토지주택박물관 연구총서 제15집, 雜中日誌(全三冊), 2010.

現代史資料 26, 朝鮮 2, みすず書房, 1973.

金澤賢 譯, 歷史와 眞實, 靑史, 1982.

ADAMSCHAFF, History and Truth, Pergamon Press, 1976.

〈논문 및 기타〉

高橋兵吉, 朝鮮教育史考, 帝國地方行政學會 朝鮮本部, 1927.

광복50주년기념 기념논문집 권1 <과거청산>, 학술진흥재단, 1995.

宮田節子, 皇民化政策の構造, 朝鮮史研究會論文集, 제29집, 1991.

鈴木敬夫, 併合以前の治安法, 韓國法史學論叢, 박영사, 1991.

김기석, 광무제의 주권수호외교--1905~1907, 일본의 대한제국강점, 까치, 1995.

김용섭, 일본 · 한국에 있어서의 한국사서술, 역사학보 제31집, 1966.

김용옥, 일제에 의한 가족법제의 왜곡과 청산, 한국학술진흥재단, 1995.

김창록, 식민지 피지배기 법제의 기초, 법제연구 제8호, 1995.

김동명,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체제의 개편--3.1운동직후 조선에서의 동화주의 지배체제의 확정, 한일관계사연구, 제9집, 1998.

김성준, 일제강점하 조선어말살정책연구--조선교육령을 중심으로, 국사관 논총, 2004(제105집).

김창록 정종섭,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구조의 성격, 광복50주년기념 논문집 권1, 한국학술진흥재단, 1995.

南次郎, 道知事會議 に於ける總督指示, 1939.5.29.

南興祐, 日帝의 韓國侵略에 있어서의 法規範과 그 適用에 관한 問題, 亞細亞研究 제33호, 1969.

孫禎睦, 日帝下 夫餘神宮運營과 소위 扶餘神都 建設, 韓國學報 제49집, 1987.

松岡修太郎, 朝鮮に於ける行政權及びその立法權並びに司法權との關係, 京城帝大法文學會 法政論纂 第4冊.

신동운, 일제하 형사질차에 관한 연구, 한국법사학논총, 박영사, 1991.

신용하, 일제의 한국민족말살 ‘황국신민화’정책, 백범과민족운동연구, 2006.

野村滿, 保安法(光武11年 法律第2號)の史的素描, 司法協會雜誌 第22卷第11號, 1943.

野村調太郎, 祖上の祭祀と現行の法律, 司法協會雜誌 제5권 제4호, 1926.4.

운노 후쿠주(海野 福壽), [2000년 한일문화심포지움-- 과거청산과 21세기의 한일관계]의 제1주제 ‘韓日合拼條約과 韓日協定에 관하여’, 2000.

이명화, 조선총독부의 언어동화정책, 한국독립운동사연구제9집, 1995

李淑子, 日本統治下朝鮮における日本語教育--朝鮮教育令との関連において --, 朝鮮學報 第75輯, 1975.

이지원, 일제하 민족문화인식의 전개와 민족문화운동--민족주의 계열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이태진, 1905년 조약 강제시의 한국주차군의 성격, 한국사론 제54권, 2008.6.

정창석, ‘내선일체’논리의 양상, 일본학보, 제42집, 1999.6.

齊藤榮治, 大正8年 制令第7號む論ず, 司法協會雜誌 第2卷 第6號, 1923.

조동걸, 한국근대학생운동조직의 성격변화, 한국근대민족주의운동사연구, 역사학회편, 일조각, 1987.

朝鮮總督府官房文書課編纂, [諭告 訓示 演述總攬], 朝鮮行政學會, 1941.

崔由利, 日帝末期 言論政策의 性格--동아 조선일보의 폐간을 중심으로, 梨花史學研究, 1993(제20, 21합집).

한인섭, 식민지 형사법제의 구조와 유산, 그 청산의 문제, 광복50주년기념 논집1, 한국학술진흥재단, 1995.

한인섭, 치안유지법과 식민지통제법령의 전개, 한국법사학논총, 박영사, 1991.

홍순호, 한일외교의 국제관계사적 성찰, 광복50주년기념논문집 권1, 한국

학술진홍재단, 1995.

홍순호, 한일외교의 국제관계사적 성찰, 한국학술진홍재단, 1995.

東亞日報廢刊ニ對スル關屋氏ノ質疑要領, 1939.

대한변협신문, 법률가 이준열사와 기자, 2010.6.21(제309호).

동아일보, ‘官民野合의 漁利運動’, 1924. 4. 2.

조선일보, ‘珍島사건에 대하여’, 1924.12. 7.

A Study on the Laws and Policy to Korean Nation Eradication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Lee, Jong-Khil*

One hundred years ago(1910 A.D.), Imperial Japan swallowed up Dae-Han Empire(Korea) with coercive measures. Japanese Imperialism made a promise Korea to guard that he would support the independence of Korea and the peace of the Orient. But Imperialist Japan, the promise to Korea was fraud, and absorbed Korea into his government making use of diplomatic skills that was isolated Korea.

In 明治(Meiji) period Japan, nationalist ideology consisted of a blend of native and imported political philosophies, initially developed by the Meiji government to promote national unity and patriotism, first in defense against colonization by European powers, and later in a struggle to attain equality with the Great Powers. It evolved through the 大正(Taisho) period and 昭和(Showa) periods to justify an increasingly totalitarian government and overseas expansionism.

In the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y, various Western countries actively competed for influence, trade, goods, and territory in East Asia. And Japan sought to join these modern colonial powers. The newly modernized 明治(Meiji) government of Japan turned to Korea, then in the sphere of influence of China's 清(Qing) Dynasty. The Japanese government initially sought to separate Korea from Qing and make Korea a Japanese colonialization in order to further the encroachment of the Asian Continent.

After all, on 22 August 1910, Japan effectively annexed Korea with the Japan-Korea Annexation Treaty, and that was made public on 29 Aug. 1910. But the scholars succeeded in revealing that Japan coerced Korea to sign two treaties that led to the colonization of the latter, pointing out that they were illegal. By using threats and intimidation, the island nation concluded the Japan-Korea

* Professor, Law School of Dong-A University.

Protocol in 1905(illegally signed in September 1905), and the Japan-Korea Annexation Treaty in 1910.

Focus of this article was mainly placed upon the function of laws in Japan's colonial laws and policy, and the unification strategies adopted in the fields of culture and education were designed to eradicate the individual ethnicity of the Korean race. Eventually the fixed purpose of Japan's colonial laws and policy were to eradicate the individual ethnicity of the Korean race, and secondly was to dispossess Korean of his property. Imperialist Japan contemplated to eradicate Korean race through the colonial laws and policy. Imperialist Japan regarded laws as instruments to dominate Korea with injustice and dishonesty.

From this point of view, <創氏改名>(Being compelled to create Korean's family name and change his personal name) was the heart of the matter that was to eradicate the individual ethnicity of the Korean race, in the eye of the laws. By 1939, the focus of the policy of Japanese Imperialism had shifted towards colonial assimilation, and <勅令第19号 ‘朝鮮民事令改正令’>(Imperial Decree 19 on the Revision of Korean Civil Affairs, on 10 Nov. 1939) went into effect, whereby ethnic Koreans were permitted to surrender their Korean family name and adopt Japanese surnames. Although officially voluntary, many argued official compulsion and harassment existed against individuals.

Reflecting on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We koreans should keep the cause of world peace, social justice, and rule of laws in mind.

Key Words : Japanese Imperialism , Colonial policy, Korean Nation Eradication, Coercive Annexation, Korean Civil Affairs, Injustice, Rule of Laws